



#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의료기관용

2020. 1.

##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b>명칭</b>	<b>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의료기관용)</b>
-----------	---------------------------------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등록대상 여부</b>	<input type="checkbox"/>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input type="checkbox"/>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b>지침서· 안내서 구분</b>	<input type="checkbox"/>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input type="checkbox"/> 예(☞지침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안내서)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기타 확인 사항</b>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0 년 1월 22일

담당자 : 홍수현  
확 인 : 최승진

이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제도 시행('18.5.18.)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달라지는 마약류 취급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합니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0년 1월 22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민원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43-719-2891~2899

- 팩스번호 : 043-719-2890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http://www.nims.or.kr)) 사용관련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1670-6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의료 기관 용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CONTENT

<b>I</b>	<b>마약류 취급 기본정보</b>	<b>1</b>
<b>II</b>	<b>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사항</b>	<b>7</b>
	1. 의료기관의 취급업무	8
	2. 취급자 의무 또는 준수사항	9
	1) 마약류 취급보고	
	2) 마약류 양도·양수	
	3) 사고마약류 보고	
	4) 마약류 폐기	
	5) 의료기관 개설변경·폐업 시 마약류 처리	
	6) 마약류 판매·구입 등 허용 유통 경로	
	7) 마약류 처방전 등의 발급 및 보관	
	8) 마약류관리자 지정	
	9) 마약류 도난·유출방지 등 준수사항	
	10)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11) 불량마약류 처리	
	3. 의료기관 업무절차별 세부 설명	28
<b>III</b>	<b>마약류 취급보고 설명</b>	<b>45</b>
	<b>붙임자료</b> 1. 최근 제도 변경사항	55
	2. 용어 정의	63
	3. 마약류 취급보고 따라하기 매뉴얼	71

#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의료기관용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I

## 마약류 취급 기본정보



## I

# 마약류 취급 기본정보

## 1. 마약류 정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 및 **대마**를 ‘**마약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 📄 마약류 현황

- ▶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추출 알칼로이드 및 이와 동등한 화학적 합성품
- ▶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 ▶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한 제품 및 화학적 합성품

#### 〈 마약류 지정 현황 〉

(2019. 12. 31. 기준)

구분	합계	마약	향정	대마
지정 성분수(개)	409	133	272	4

## 2.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 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약국), 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등), 관리자, 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를 마약류 취급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호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3. 마약류취급승인자

- 「마약류 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별도로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제3조는 마약류 취급에 대하여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취급승인 대상

### 〈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취급승인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 〉

-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 ▶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 ▶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가 향정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 ▶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 ▶ 그 외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취급승인 (향정 등) 〉

-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 ▶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 ▶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 ▶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 ▶ 그 외 향정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승인 〉

- ▶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향정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취급하는 경우
- ▶ 향정 제외인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를 하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취급하는 경우
- ▶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 ▶ 의약품을 분류·포장하는 기계·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향정을 취급하는 경우
- ▶ 공무수행 또는 공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 ▶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 ▶ 도핑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 ▶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 ▶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

또는 향정을 취급하는 경우

- ▶ 의료봉사 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이 해외 의료봉사·원조·지원을 위해 취급하는 경우
- ▶ 「항공안전법」에 따른 구급의료용품 탑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게시판의 「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및 절차(민원인 안내서)」 참고

## 4. 마약류 취급행위

- 마약류취급자는 반드시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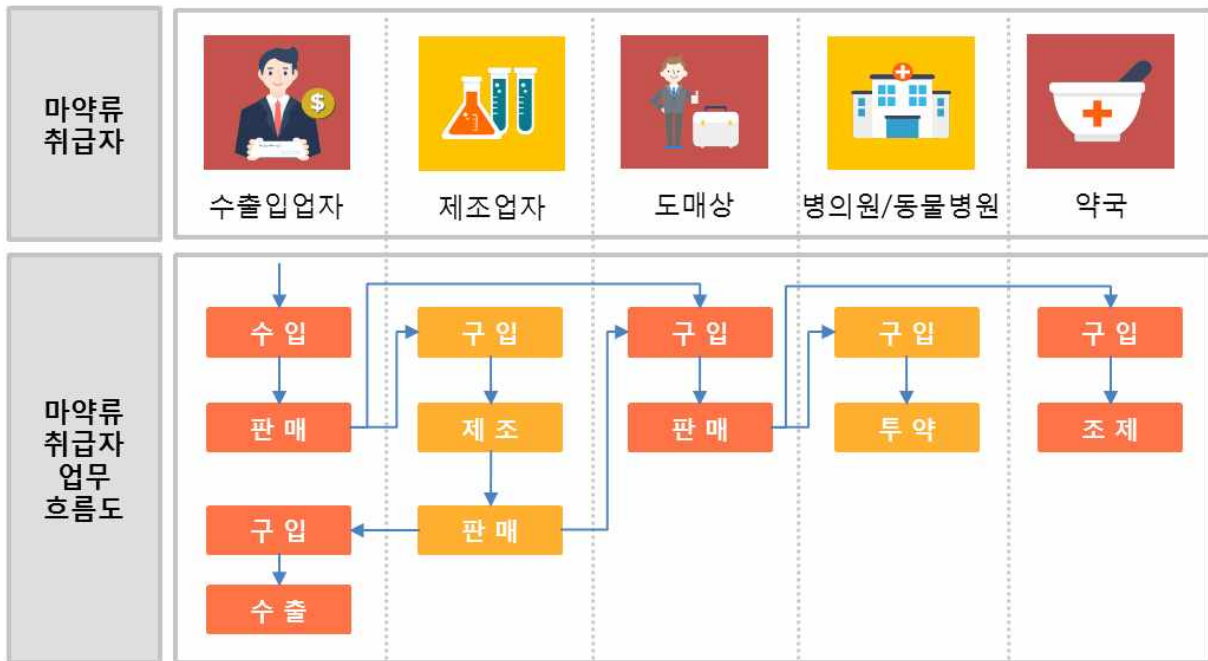
취급 유형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 승인자
	수출입 업자	제조 업자	원료 사용자	도매 업자	소매 업자	취급 의료업자	학술 연구자	
수출입	●							
제조		●						
원료사용			●					
판매	●	●		●				
양도	●	●	●	●	●	●	●	●
양수	●	●	●	●	●	●	●	●
구입	●	●	●	●	●	●	●	
조제					●	○ <sup>2)</sup>		
투약						●		
사용 <sup>1)</sup>	●	●	●			●	●	●
폐기	●	●	●	●	●	●	●	●

1) 품질관리, 학술연구, 공무원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마약류관리자(약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조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5.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취급자별 보고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II

##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사항

## II

##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사항

## 1. 의료기관의 취급업무

취급업무	허가관청에서 처리	식약처로 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입		▶ 구입보고
투약 (또는 조제)		▶ 투약보고(또는 조제보고)
사고마약류 발생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폐기	▶ 사고마약류 등 폐기 신청	▶ 폐기보고
양도·양수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 양도보고/양수보고
마약류관리자 지정	▶ 마약류관리자 지정·지정변경 등의 민원업무	
기타	▶ 기타 개설허가·신고, 휴·폐업 등의 민원업무	

## 2. 취급자 의무 또는 준수사항

### 1 마약류 취급보고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이하 ‘마약류취급자등’)가 마약 또는 향정을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취급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식약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접속하거나 마약류취급자등이 사용하는 업무 소프트웨어의 연계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취급 세부정보를 입력 또는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계보고 기능이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개한 소프트웨어 개발가이드에 따라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취급보고 정보를 송·수신하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능을 말합니다.
- 마약류취급자등이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정보는 실제로 취급하거나 소지하는 제품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① 참고사항

연계보고 소프트웨어(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관리시스템(EMR), 처방정보전달시스템(OCS) 등)는 보고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급 보고자는 정상보고 여부 및 전산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매일(소량 취급자는 주1회 이상) 확인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의료기관의 취급업무와 관련한 상세 취급보고 설명은 ‘3. 의료기관 업무절차별 세부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승인번호 및 허가·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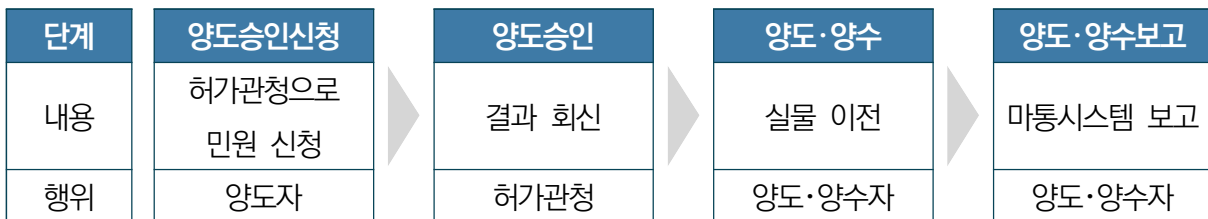
④ ~ ⑤ < 생 략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절차·시기 등 및 제5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5. 5. 18.]

## 2 마약류 양도·양수

### < 처리 절차 >



- 마약류취급자등이 반품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할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마약류 취급자등이 **사전에 허가관청(관할 보건소 등)으로부터 양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양도자는 허가관청의 양도승인이 완료된 이후 마약류를 양도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거래합니다.

### ⚠ 주의사항

- ▶ 회수대상 마약류\*는 신속한 회수를 위해 허가관청의 양도승인 받지 않고 양도·양수보고 합니다.
- \* 품질부적합, 위해우려 등의 사유로 영업자(제조업체·수입업체)가 회수를 공표하거나, 정부의 회수 명령에 따라 회수하는 마약류

-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으며, 마약류취급자등이 아닌 자로부터는 양수할 수 없습니다.

### ① 개봉된 마약류의 반품

※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개봉된 마약류(날개 의약품 등)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제3호)
- ▶ **폐업, 학술연구 종료, 마약류취급자등 허가·지정 취소** 등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법 제13조)

### 📖 관련 법령 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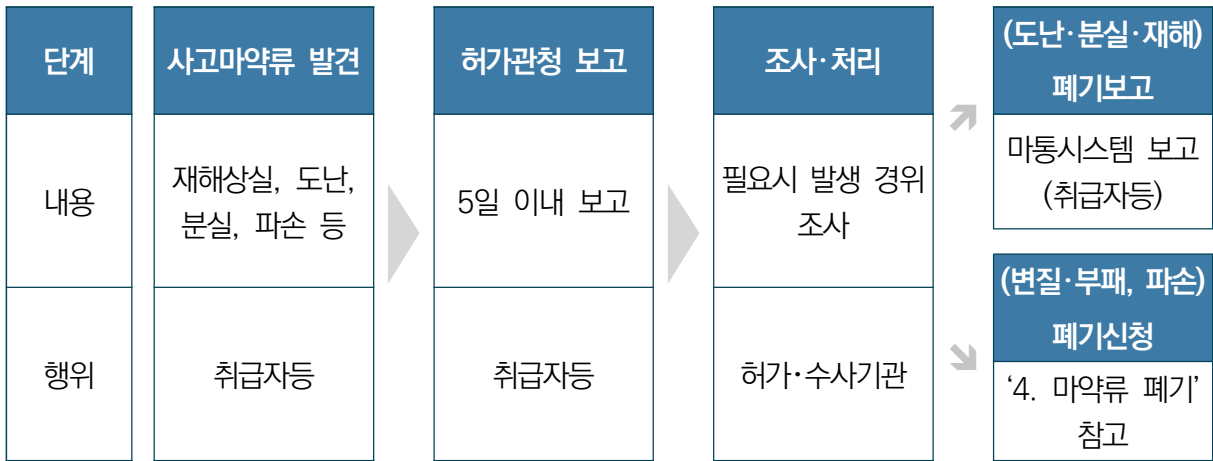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12. 11.>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2016. 2. 3.>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 pharmaceutics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 3 사고마약류 보고

#### 〈 처리 절차 〉



- 마약류취급자등이 마약류 도난·분실, 파손 등 사고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 관리법」 제12조의 제1항에 따르면, 사고마약류란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를 말합니다.
- 사고마약류 발생보고는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사고발생 경위(육하 원칙에 맞게 기재)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 ① 사고마약류 발생 증명 서류

- ▶ (재해 상실)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증명서류 첨부
- ▶ (분실, 도난) 수사기관의 증명서류(접수증) 첨부
- ▶ (변질·부패, 파손) 해당 없음

- 사고마약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 4 마약류 폐기

### 〈 처리 절차 〉

단계	폐기신청	허가관청 폐기	폐기보고
내용	민원신청 (별지 26호서식)	폐기 후 결과회신	마통시스템 보고
행위	취급자등	허가관청	취급자등

#### ● 사고마약류 및 유통기한 경과 마약류 등 폐기

- 일상적인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유통기한 경과 마약류 또는 재고관리가 곤란한 경우와 같은 폐기대상 마약류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 등 폐기민원을 신청합니다.
- 관계 공무원과 폐기장소 등을 협의하여 폐기를 마치면 허가관청에서는 폐기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됩니다.
- 마약류취급자등은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하여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를 합니다.

#### ① 마약류(실물)와 전산재고의 제품정보 불일치 시 폐기방법

- ▶ 원칙적으로 폐기보고하는 마약류의 제품정보(일련번호, 제조번호 등)는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현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기 신청하는 실물의 제품정보와 전산시스템상 남아있는 재고의 제품정보가 다를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폐기신청·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취급자는 실물을 기준으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향후 폐기보고시 재고차감할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화면캡처 등)를 폐기 신청서와 함께 허가관청에 제출합니다.
  - ② 허가관청으로부터 폐기 민원처리 결과 공문을 받으면, 취급자는 폐기 신청시 제출한 근거자료와 일치하는 제품정보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 합니다.

#### 📖 관련 법령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5. 23., 2008. 10. 31., 2012. 6. 15., 2013. 10. 31.>

② < 생 략 >

③ 제1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6. 5. 23., 2008. 10. 3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 : 관할 시·도지사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유 : 수사기관

④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3., 2008. 10. 31., 2012. 6. 15., 2013. 10. 31.>

⑤ 제4항에 따른 폐기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이를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17., 2008. 10. 31., 2012. 6. 15., 2018. 10. 31.>

⑥ < 생 략 >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자체 폐기

①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마약 또는 행정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 잔량을 말합니다.

(예시) 주사제 1 앰플 처방 시 0.6앰플을 투약하고 남은 잔량 0.4앰플  
경구제 1정 미만의 소량을 처방한 경우 조제하고 남은 잔량

▶ 마약류취급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투약 또는 조제보고의 '사용 후 폐기량' 항목에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가급적 2주를 이내에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합니다.

**⚠ 주의사항**

- ▶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 주사제를 투약하기 위해 개봉하였으나 환자 상태 변화 등으로 투약하지 않고 **취소처방과 함께 약제실로 반납하는 경우,**  
 ⇨ **관할 보건소로 폐기신청**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로 **자체폐기하지 않도록 주의**)
- ▶ **폐업 시 남아있는 마약류** 재고의 경우,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체폐기하지 않도록 주의**

- 폐기방법이란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폐기 시 마약류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하거나, 2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하여 폐기한 후 마약류취급자가 폐기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내역과 현장사진\* 등 근거자료를 2년간 보관합니다.
- \*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한 상태(희석, 개봉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리기 등)를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 자체폐기 방법 및 근거 예시**

**〈 폐기 방법 〉**

- ① 투약하고 남은 개봉된 주사제 등 마약류를 의료폐기물 상자에 넣어 다른 폐기물과 섞어 폐기
  - ② 경구제를 분쇄하여 다른 폐기할 약과 섞어 폐기
  - ③ 마개가 닫혀있는 바이알, 경구제 등은 물이나 잉크로 희석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환
  - ④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기타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희석, 가수분해 등)
- ※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폐기이며, 이후 폐기업체에서 소각 등은 「환경법」에 따른 것임

**〈 폐기 근거자료 양식 예시 〉**

품명	회사명	투약·조제일	폐기일	폐기 수량	폐기 장소	폐기 방법	입회자	근거 자료	확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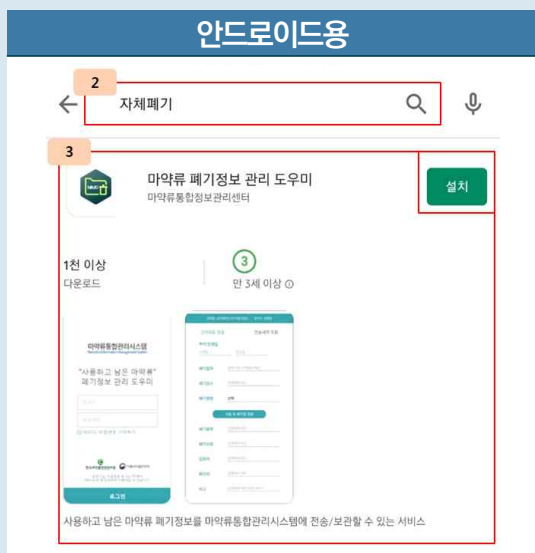
\* 자체폐기 근거자료 양식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약류취급자등이 스스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정보항목을 포함하여 양식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폐기방법 예시**



**‘마약류 폐기정보 관리 도우미’ 모바일 앱 활용**

- ▶ **(제공기능)**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폐기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찍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전송 및 저장하여 폐기정보를 손쉽게 관리 가능
- ▶ **(설치방법)** ① 안드로이드용은 구글 Play스토어에서, 아이폰용은 앱스토어 접속  
 ② 검색창에 ‘자체폐기’ 또는 ‘마약류’ 검색  
 ③ 검색목록에서 “마약류 폐기정보 관리 도우미” 앱 설치





● 환자 지참마약류 등 폐기

-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가져왔다가 두고 가는 등 의료기관에서 관리 의무가 없는 마약류의 경우, 해당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로 전달하여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참마약류 등 예시

- ▶ 입원환자가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사망 또는 퇴원으로 약품을 의료기관에 두고 가는 경우
-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품을 가져와 복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 ▶ 환자가 가정에서 복용하던 약품을 사망 또는 치료 후 가족이 의료기관 등에 가져다 준 경우

- 의료기관에서 환자 지참마약류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전달하여 폐기한 경우, 해당 수량은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에 폐기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5** 의료기관 개설변경·폐업 시 마약류 처리

● 폐업 시 마약류 처리

〈 처리 절차 〉

단계	재고 확인	재고 마약류 처리	폐업 처리
내용	마약류통합시스템 보고 및 재고 확인	양도 또는 폐기 신청 및 처리	마약류 재고확인 및 폐업처리
행위	취급자등	취급자등, 허가관청	허가관청

-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아직 보고하지 않은 내역에 대한 보고를 완료한 후, 실제 남아 있는 마약류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재고 수량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물과 전산재고가 일치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의료기관 폐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원소유자(의약품도매상 등)에게 마약류 재고를 반품하여 양도하거나 허가관청에 마약류 폐기를 신청하여 폐기하는 등 마약류 재고를 처리합니다.



- 만약, 마약류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료기관 폐업처리를 하였다면 허가관청에 폐업 이후 20일 이내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승인을 신청하여 양수자에게 양도합니다.

※ 자격상실자에게 남은 마약류 재고에 대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양도처리는 관할기관 공무원이 보고합니다.

### ● 개설허가(신고)번호가 유지되는 변경

-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의료법」에 따라 기존 개설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개설허가(신고)번호가 동일하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업체 정보를 변경합니다.
- 참고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정 정보를 변경된 대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정 변경 방법

- ① 새로운 대표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업체 관리자에게 승인 받습니다.
- ② 종전 계정 관리자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마스터 권한 이관을 요청합니다.
- ③ 새로운 대표자는 마스터 권한을 부여받으면 해당 계정으로 취급보고를 할 수 있으며, 종전 계정 관리자는 회원탈퇴를 합니다.

### ● 개설허가(신고)번호가 바뀌는 변경

- 동일한 의료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관할 허가 관청이 바뀌고 새로 개설허가(신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새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새로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변경 이전 계정에 있는 마약류 재고를 새로 가입한 계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 ① 신규 계정으로 마약류 재고 이동 방법

- (종전 계정) ① 보고유형: 기타출고처리 ② 출고구분: 동일업체전입전출  
③ 수량: 남은 마약류 전체량
- (신규 계정) ① 보고유형: 기타입고처리 ② 입고구분: 동일업체전입전출  
③ 수량: 기타출고한 마약류 수량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마약류 판매·구입 등 허용 유통 경로

-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유형별로 판매·구입 등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	대상 마약류	구입 가능한 자	
마약류수출입업자	수입한 마약·향정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제조업자	제조한 마약	마약류도매업자	
	제조한 향정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b>마약류취급의료업자</b>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마약류소매업자	
		<b>마약류취급의료업자</b>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단,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받은 경우 판매 가능	향정	마약류소매업자
			<b>마약류취급의료업자</b>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도매업자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의 구입 가능자에게 판매 가능

- 그 외 반품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할 수 있으나, 사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양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 26조(마약류의 도매)

## 7 마약류 처방전 등의 발급 및 보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전에 따라서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약사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아닌 진료기록부 또는 진료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의약분업 예외지역일지라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간호사, 조무사, 또는 약사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를 대신하여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습니다.

### 📖 관련 법령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

1.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마약·향정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관련 질의·응답

#### ①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를 꼭 기재해야 하나요?

- ➔ 네,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방전에 소재지란 추가·기재, 명판날인, 여백기재 등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방전에 요양기관기호가 기재된 경우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니 이 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료기관 내에서 발행하는 원내처방전도 기재해야 하나요?

➔ 아니요. 의무기재는 환자에게 발행하는 원외처방전이 해당됩니다.

③ 약국용/ 환자용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 네.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행자)를 기재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2. 3.>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포함)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마약류 취급보고 시행일('18.5.18) 이전의 마약류관리대장, 마약 구입서·판매서, 마약 투약 기록 등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또한, 마약류 취급보고 시행일('18.5.18) 이후에 경과조치로 인해 전산보고를 하지 않고 종전 방식으로 작성한 마약류관리대장 등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1441호, 2018.2.9.) 제3조(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마약류취급자 등의 기록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 8 마약류관리자 지정

### ● 지정요건 및 변경

-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청서 및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게 제출합니다.

※ 마약·향정을 직접 구입하여 취급하지 않고 처방만 하는 의료기관 또는 향정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퇴사, 행정처분 등 사정에 따라 마약류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마약류를 인계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합니다.
- 만약,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인계받아 관리합니다.

### ● 마약류관리자의 업무

- 병원 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병원 자체 마약류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병원 내 모든 마약류취급자(관리보조자 포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 ⚠ 주의사항

- ▶ 마약류관리자가 2인 이상 경우, 병원 내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 관리법」 제50조에서 정하는 마약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보조자를 정하여 일부 관리업무를 분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약제부 외 마약류 취급 장소별(응급실, 외래, 수술실, 중환자실 등) 또는 제품별, 종류별로 약사, 간호사를 관리보조자로 지명하여 마약류를 관리합니다.

### ①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업무

- ▶ 마약류 취급 장소별 또는 제품별, 종류별 마약류 사용, 보관, 보고(기록) 등 다음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비상마약류의 보관·불출·재고관리·운반 등 업무보조

- 유효기한경과, 반납,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보관관리 등 업무보조
- 사고마약류 발생 시 신속보고 등
- 기타 제반 마약류의 관리(저장시설 점검부 작성·관리) 등
- ▶ 마약류관리자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9 마약류 도난·유출방지 등 준수사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보존**
  - 마약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사자 이외의 사람을 출입 시켜서는 안 됩니다.
  -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도난·유출 방지 및 지도·감독**
  -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마약류의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주요 준수사항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권고사항

- ▶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
- ▶ 마약·향정의 저장장소는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지정
-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된 금고)에 보관
- ▶ 향정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 파손, 유효기한경과 마약류 등 폐기마약류도 위와 동일한 장소에 보관

- \* 단, 폐기대상 마약류는 사용 중인 마약류와 구분하여 보관
- ▶ 마약류 저장시설을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이나 잠금장치의 파손이 어렵도록 조치
  - \* 마약류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는 무인경비장치, CCTV 등 설치 권장
- ▶ 냉장보관 등 특별한 보관조건이 필요한 마약류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 운송 중 마약류가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운송차량 저장시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운송차량의 문, 마약류 저장시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함.
- ▶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운송담당자로 정하고, 가능한 한 복수의 인원이 운송
- ▶ 차량 내부의 마약류 저장시설과는 별개로 운송차량의 문은 잠금장치(자동잠금장치 포함)가 있어야 하며, 항상 잘 잠겨진 상태여야 함
- ▶ 조제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항정의 경우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
- ▶ 병원 내 마약류 운반 시 파손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방안(탄력 있는 받침대 사용 등)을 강구하여 조치

#### 관련 법령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 10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 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도 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1회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한 의료기관의 경우 동 마약류취급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교육을 이수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지정을 받은 경우는 교육 이수가 의무는 아닙니다.

### ☞ 관련 법령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법 제50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1. 17., 2008. 10. 31., 2012. 6. 1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0. 31., 2012. 6. 15., 2016. 11. 4.>



## 11 불량마약류 처리

### 불량마약류란

불량마약류: 내용물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포장된 의료용 마약류

- 불량마약류 발견 시 '불량마약류 보고서'(붙임 1)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보고합니다.
  - 발견 경위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허가관청에 보고하면 담당공무원이 마약류취급자로부터 불량마약류를 수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 마약류 재고를 차감합니다.

### 불량마약류 수거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재고 반영 방법

- 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로그인
- ② 상단 [보고] 메뉴 → [기타출고처리] 기능을 선택
- ③ 상단 우측 '신규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 ④ 입력화면의 '출고구분'을 '불량마약류 수거' 선택
- ⑤ 상대 거래자(해당 제품의 제조·수출입업자) 정보 및 수거물품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합니다.

※ 수거물품 수량은 최초 구입(양수)보고시 해당 제품에 대해 보고한 수량을 입력합니다.

## 【붙임 1. 불량마약류 보고서】

[불량마약류 보고서]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b>불량마약류 정보</b>			
불량마약류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품명	수량	제조사(수입자)명
발견일자			
처리현황			
발견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불량마약류 발견 경위를 상세히 기록할 것		
위와 같이 불량마약류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3. 의료기관 업무절차별 세부 설명

#### 〈 취급보고사항 〉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연번	행 위	보고항목	시 점
1	마약류 구입	구입보고	실물 입고일로부터 7일 이내
2	마약류 투약 (또는 조제)	투약보고 (또는 조제보고)	투약(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필요 시			
발 생 시	마약류 양도·양수	양도보고 양수보고	실물 양도일 또는 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폐기결과 보고	폐기보고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민원처리 완료 후 7일 이내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연번	행 위	보고항목	시 점
1	마약류 구입	구입보고	실물 입고일의 다음달 10일까지
2	마약류 투약 <sup>1)</sup> (또는 조제)	투약보고 (또는 조제보고)	투약(조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필요 시			
발 생 시	마약류 양도·양수	양도보고 양수보고	실물 양도 또는 양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폐기결과 보고	폐기보고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민원처리 완료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보고가 원칙이나,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조제보고” 하고 해당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약보고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투약기록 별도 보관).

#### 주의사항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보고”할 경우, 투약보고 하지 않습니다. (중복보고 우려)

## 1 입고

- ① 마약류 물품이 입고되면 다른 의약품 보다 먼저 입고작업을 합니다.
- ② 주문내역과 구매한 물품의 정보를 확인한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보고(품명·**제조번호·일련번호**·유효기한·수량 등 구입정보)를 합니다.
  - 품명·수량 등 구입내역이 주문내역과 상이한 경우, 상대 판매자와 확인하고, 도난·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마약류발생 보고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 ⚠ 주의사항

- ▶ 판매자(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가 잘못 보고한 정보를 불러와서 구입보고를 하여 보고오류가 발생한 경우, 보고의무는 각 마약류취급자에게 있으므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 ⇒ 구입보고 시 구입한 실물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바코드·RFID 태그 훼손으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① 판매자가 판매보고를 완료한 경우, 구입자는 마통시스템 또는 연계SW에서 해당 정보를 불러와 구입보고 항목에 자동 입력할 수 있으며, 마약류 실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있는 **의약품일련번호 정보를 육안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보고 합니다.
- ② 구입보고 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의약품일련번호는 정보 검색 창에 제조 또는 수출입업자가 보고한 제품의 전체 **의약품일련번호를 일부 글자만 검색한 후 선택하여 보고** 합니다.
- ③ 의약품일련번호의 가독문자가 없는 전자태그(RFID tag)가 부착된 마약류는 **리더기를 사용하여 의약품일련번호를 보고** 합니다.

### ① 바코드·RFID 태그 훼손으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구입자) 판매자로부터 판매정보를 확인하여
  - ① 구입보고, ② 양도승인신청, ③ 양도보고(사유: 반품)
- ▶ (판매자) 양수보고(사유: 반품)

## 2 보관

- ① 마약·향정은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합니다.

### i 저장방법

- ▶ (마약)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이동이 불가능한 철제금고(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된 금고)에 보관
- ▶ (향정) 이동이 불가능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②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매일 권장)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비치·보관(2년)하여야 합니다.
- ③ 반품,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등도 별도로 저장시설을 갖추거나, 저장시설 내 정상 마약류와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 3 조제 및 투약

### i 마약류 일련번호·제조번호 보고방법

-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마약과 프로포폴)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련번호를 보고**합니다.
  - 구입, 양도 등 마약류 취급자간 약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 투약·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소진하는 경우에는 주사제는 일련번호 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고하고, 주사제를 제외한 제형은 일련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련번호를 미 입력하거나 입고되지 않은 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프로포폴 이외 향정)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제조번호를 보고**합니다.
  - 구입, 양도 등 마약류 취급자간 약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 투약·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번호를 미 입력하거나 입고되지 않은 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입고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나 제조번호를 보고하더라도 조제 시 번호 순서에 맞도록 약품을 사용하여 가급적 환자에게 제공한 번호와 일치시켜 보고합니다.

###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환자 안내 협조 요청사항

- ▶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시 환자에게 아래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의료용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의약품은 각 환자의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하여 처방된 것이므로, **의사의 지시(처방)에 따라 용법·용량 등을 준수하여 복용**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 의약품의 **저장방법, 부작용** 등을 복약지도 합니다.
  - 환자가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위반될 수 있음)

### ⚠️ 주의사항

-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보고”할 경우, “투약보고” 하지 않습니다.(중복보고 우려)
- ▶ 입원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지참마약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조제(투약)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1) 조제보고 (의료기관내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경우)

### ① 참고사항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보고가 원칙이나,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조제보고 하고 해당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약보고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해당 투약기록은 별도로 보관)

### 📖 관련 법령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12.〉

1. ~ 6. 〈 생 략 〉

7.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의 조제 또는 투약 보고: 별지 제19호의7 서식. 다만, 마약류관리자가 조제 보고를 하고 그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투약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① 약제실에서 마약·향정이 포함된 처방전을 받으면 마약류 저장시설에 있는 마약·향정 제품을 꺼내어 조제하고, 다시 마약류 저장시설에 보관 합니다. 단,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향정은 업무시간 중에는 조제대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 ② 처방전과 조제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 환자정보(환자명·주민번호·질병분류기호), 처방정보(처방전 발급기관명·요양기관기호·처방전 교부번호·의사명·면허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보고를 합니다.
  - \* 외국인 환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보고하며, 주한미군은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환자식별번호로 선택하여 보고가능
  - 소수점 이하의 마약류 처방이 나온 경우 1회 투여량·투여횟수·투여일수는 처방을 근거로 작성하고 총 조제량은 실제 조제에 사용한 양을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 ③ 병동에서는 약제부에서 조제한 마약류를 의사 처방과 동일한지 확인한 후 환자에게 투약합니다.
- ④ 해당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기록·보관합니다.

### ☞ 예시 1

- ▶ 1정 1/3 분할 투여 등 **실제 처방량**과 조제량은 동일(1정)하나 **전산표기**( $0.33*3=0.99$ 정)에 의한 **사용량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1회 0.33정, 1일 3회 투여 처방인 경우
    - ⇒ (조제보고) 1회 투여량 (**0.33정**), 투여횟수 (**3회**), 일수 (**1일**)  
**조제량 (1정)** 으로 표시 (재고는 1개 차감)

### ☞ 예시 2

- ▶ 1정 미만 경구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
  -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여 처방인 경우,
    - ⇒ (조제보고) 1회 투여량 (**0.78정**),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 ① 조제 후 잔량을 다른 처방에 사용하는 경우, 조제량 (**0.78정**) 으로 표시 (재고는 0.78정 차감)
      - ② 조제 후 잔량을 폐기하는 경우,

**조제량 (1정), 사용후폐기량\*(0.22정)** 으로 표시 (재고는 1정 차감)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에서 자체폐기 [6. 참고]

### 예시 3

#### ▶ 1병 이하로 주사제를 조제한 경우

- 1회 투여량이 0.6앰플, 1일 1회 처방인 경우,

⇒ (조제보고) 1회 투여량 (0.6개),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조제량 (1개), 사용후폐기량\*(0.4개)** 으로 표시 (재고는 1개 차감)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에서 자체폐기 [6. 참고]

### 예시 4

#### ▶ 일련번호가 다른 마약류 주사제 2병을 조제한 경우

- 1회 투여량이 2앰플, 1일 1회 처방인 경우,

⇒ (조제보고) 1회 투여량 (2개),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일련번호 12345 조제량 (1개), 일련번호 23456 조제량(1개)** 으로 표시

(일련번호별 조제량 기재, 재고는 2개 차감)

## (2) 투약보고

- ① 약제실에서 마약·향정이 포함된 처방전을 받으면 마약류 저장시설에 있는 마약·향정 제품을 꺼내어(선입선출) 조제하고, 다시 마약류 저장시설에 보관 합니다. 단,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향정은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 ② 처방전과 조제(투약)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 환자정보(환자명·주민번호·질병분류기호), 처방정보(처방전 발급기관명·요양기관기호·처방전 교부번호·의사명·면허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병원 연계소프트웨어(EMR, OCS 등)에 입력 또는 해당 정보를 기록합니다.
- ③ 병동에서는 약제부에서 조제한 마약류가 의사 처방과 동일한지 확인한 후 환자에게 투약합니다.



④ 투약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 환자정보(환자명·주민번호·질병분류 기호), 처방정보(처방전 발급기관명·요양기관기호·처방전 교부번호·의사명·면허번호), 수량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보고를 합니다.

- 소수점 이하의 마약류 처방이 나온 경우 1회 투여량·투여횟수·투여일수는 처방전을 근거로 작성하고, 총 투약량은 실제 투약에 사용한 양을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 ☞ 예시 1

▶ 1정 1/3 분할 투여 등 실제 처방량과 조제량은 동일(1정)하나 전산표기( $0.33 \times 3 = 0.99$ 정)에 의한 사용량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1회 0.33정, 1일 3회 투여 처방인 경우

⇒ (투약보고) 1회 투여량 (0.33정), 투여횟수 (3회), 일수 (1일)

투여량 (1정) 으로 표시 (재고는 1개 차감)

### ☞ 예시 2

▶ 1정 미만 경구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

-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여 처방인 경우,

⇒ (투약보고) 1회 투여량 (0.78정),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① 조제 후 잔량을 다른 처방에 사용하는 경우, 투약량 (0.78정) 으로 표시 (재고는 0.78정 차감)

② 조제 후 잔량을 폐기하는 경우, 투약량 (1정), 사용후폐기량\*(0.22정) 으로 표시 (재고는 1정 차감)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에서 자체폐기 [6. 참고]

### ☞ 예시 3

▶ 1병 이하로 주사제를 투약한 경우

- 1회 투여량이 0.6앰플, 1일 1회 처방인 경우,

⇒ (투약보고) 1회 투여량 (0.6개),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투약량 (1개), 사용후폐기량\*(0.4개) 으로 표시 (재고는 1개 차감)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에서 자체폐기 [6. 참고]

#### 예시 4

##### ▶ 일련번호가 다른 마약류 주사제 2병을 투약한 경우

- 1회 투여량이 2앰플, 1일 1회 처방인 경우,

⇒ (투약보고) 1회 투여량 (2개),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일련번호 12345 투약량 (1개), 일련번호 23456 투약량(1개) 으로 표시

(일련번호별 투약량 기재, 재고는 2개 차감)

## 4 비상마약류 사용

### 참고사항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저장소 이동처리'한 비상마약류(중점관리대상)는 입고한 순서대로 일련번호 보고 가능합니다.

### (1) 조제보고 (의료기관내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경우)

- ① 마약류관리자(약제부)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비상마약류 보관시설\*에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저장소관리'에서 새로운 저장소를 신규 등록하고, 저장소 이동처리 합니다.

\* 보관시설은 "2. 보관" 참조

- ② 해당 부서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비상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약한 후 약제부로 처방전을 전달하여 약제부에서 조제보고를 합니다.
- ③ 비상마약류 보관시설에 재고를 보충하는 경우, 약제부에서는 해당 물품을 비상마약류 보관시설로 이동시킨 후 물품에 대한 재고이동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저장소이동" 처리합니다.
- ④ 비상마약류 보관시설에서 유효기한이 경과하거나 재고 관리가 불필요한 마약류는 약제부로 다시 재고를 반납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저장소이동" 처리합니다.

## (2) 투약보고

- ① 마약류관리자(약제부)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비상마약류 보관시설\*에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저장소관리'에서 새로운 저장소를 신규 등록하고, 저장소 이동처리 합니다.

\* 보관시설은 “2. 보관” 참조

-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후 해당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보고를 합니다.
- ③ 약제부에서는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비상마약류의 실물과 물품 정보를 비상마약류 보유부서로 전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전달받은 실물과 물품정보를 확인·관리합니다.

## 5 반납

- 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마약류가 입원환자에게 전달된 경우, 반품된 마약류는 관리수준(보관온도, 습도, 차광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동·운송 과정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병원 내에서 관리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사망, 타 약물대체, 처방취소 등) 원내약국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반품된 경우에는 의사의 취소(반납) 처방을 근거로 하여 병동에서 약제부로 마약류를 반납합니다.
  - 개봉한 주사제는 공기 중의 노출, 약제실에서 불출된 이후 보관 등의 과정 상 오염될 우려가 있어 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주사제는 가급적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처방·조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 ② 조제보고한 마약류 전부가 반납된 경우, 약제부에서 최초 “조제보고”한 내역은 취소처방을 근거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보고 조회화면에서 “취소보고”를 합니다.
  - 또한 “조제보고”한 내역의 투약량 등이 변경된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보고 조회화면에서 변경보고를 합니다. 이 때 처방전이 재발급된 경우 취급일자는 처방전 재발급일자, 변경된 처방전 내용을 입력합니다.

### ① 조제한 마약류의 취소처방

- ▶ 약제부에서 마약류를 조제하여 병동으로 불출하였으나 **취소처방전이 발급된 경우** 조제행위를 한 것이므로 조제보고와 취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제 당일 마약류를 약제실에 반납한 경우에 한해 조제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료현장의 업무부담 고려).
- ▶ 약제부에서 조제한 마약류를 조제보고 대신 투약보고 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경우, **투약 전 처방이 취소**되므로 투약보고 및 변경보고 할 사항은 없으나, **취소처방을 근거로 원내 마약류를 약제부로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 ②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폐기한 후 취소처방된 경우

- ▶ **실물 조제량 0.8정**에 대해 **조제량(1정), 사용후폐기량(0.2정)**으로 조제보고 하였으나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고 처방전이 취소되어 조제된 약이 다시 약제실로 반납된 경우,
  - ① 조제 보고한 내역을 취소 보고합니다(**재고증량: 1정**).
  - ②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로 이미 자체폐기한 0.2정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기타출고처리’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재고차감: 0.2정**).

보고 구분	세부 보고 항목	재고량
조제보고	조제량 (1정), 사용후폐기량(0.2정)	-1
조제보고 취소보고		1
기타출고처리	사유구분: 재고보정, 출고수량 (0.2정)	-0.2

- ③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중 일련번호 정보가 부착되지 아니한 날개의약품(주사제)이 반납될 경우 약제부에서는 해당 마약류를 다음 조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 복수의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한 날개 의약품이 반납될 경우, 가장 마지막 일련번호를 기준(선입선출)으로 반납처리하여 재고에 반영합니다.

## 6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① 병동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는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약제부로 신속하게 반납합니다.
- ② 약제부에서는 병동에서 반납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폐기대상) 실물과 반납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폐기량은 투약(조제) 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란에 입력하여 보고합니다.
  - 조제보고를 한 이후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가 반납되었다면, 폐기량을 “사용 후 폐기량”란에 입력하여 변경보고 합니다.
- ③ 조제 또는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는 가급적 2주를 넘지 않게 법령의 폐기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자체 폐기합니다.
  - 폐기 시 마약류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하거나, 2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한 후 마약류 취급자가 확인하며 그 근거자료(사진\* 등)를 2년간 보관합니다.

\*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한 상태(희석, 개봉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리기 등)를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 7 신원미상의 환자 내원시

- ① 의사가 의식불명 응급환자 등 신원미상의 환자에게 긴급하게 마약류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투약하고 환자정보(성명, 주민번호)를 ‘무명남/무명녀(또는 병원자체 관리명칭)’ 형태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합니다.

### 신생아의 취급보고시 환자정보 입력방법

- ▶ (성명) “산모이름+아기”
- ▶ (주민등록번호) ‘무명남/무명녀 코드’ 선택하여 병원내 환자식별번호로 보고

- ② 이후 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원미확인자 변경”을 선택하여 환자정보를 수정하여 보고하고 해당 근거자료를 별도 관리합니다.

\* 변경 보고기한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만 변경보고

## 8 사고마약류 등 폐기

- ① 사고마약류,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또는 폐기대상 마약류를 폐기할 경우에는 관할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 등 폐기민원을 신청합니다.
- ② 관계 공무원과 폐기장소 등을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법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 ③ 폐기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업체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폐기결과(폐기 수량·일자·방법 등)를 민원처리일자(공문시행일)를 기준으로 보고기한 내에 폐기보고(재고 차감·미차감 대상 포함) 합니다.
  - 폐기보고 시 폐기사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고합니다.

### ① 폐기 사유

- |             |                |                   |
|-------------|----------------|-------------------|
| ① 사고마약류(파손) | ② 사고마약류(변질·부패) | ③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
| ④ 유효기한 임박   | ⑤ 사용중단         | ⑥ 폐업              |
| ⑦ 환자반납      |                |                   |
- ⑧ 기타 [사고마약류(도난·분실·재해) 발생보고 완료 건, 제조공정 중 폐기물]

※ 도난·분실·재해로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한 건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폐기보고를 하여 마약류 재고를 차감해야 합니다. (취급일자·폐기일자는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일자'로 입력)

- ④ 의료기관을 폐업하기 전 관할 보건소에 갖고 있는 폐기대상 마약류를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보고를 합니다.

### ⚠ 주의사항

- ▶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 주사제를 투약하기 위해 개봉하였으나 환자 상태 변화 등으로 투약하지 않고 **취소처방과 함께 약제실로 반납**하는 경우,
  -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로 **자체폐기하지 않도록 주의**
- ▶ **폐업 시 남아있는 마약류** 재고의 경우,
  -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체폐기하지 않도록 주의**
- ▶ 입원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조제 받은 마약류(**지참마약류**)를 가져왔다가 사망, 퇴원 등으로 두고 간 경우,
  - ⇨ 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폐기 등 관리의무는 없으나, 마약류 특성상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관할 보건소로 전달하여 폐기할 것을 권고하며, 폐기보고 대상은 아님**

## 9 마약류 반품 등 양도·양수

- ① 반품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할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양도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자는 해당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거래합니다.

### ⚠ 주의사항

▶ 회수대상 마약류는 신속한 회수를 위해 허가관청의 양도승인 받지 않고 양도·양수보고 합니다.

- ② 양도자는 마약류를 양도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승인 받은 사항대로 마약류 품명, 수량, 양수자 정보, 제조번호 및 일련번호 정보 등을 포함하여 양도보고 합니다.

- ③ 이후 양수자는 받은 마약류의 정보를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수보고를 합니다.

- 최소유통단위 형태로 양수한 경우에는 최소유통단위별로 부여된 의약품표준코드·일련번호\*·수량으로 양수보고를 하고, 개봉된 날개 의약품을 양수한 경우에는 의약품표준코드(품명·제조번호)·수량으로 양수보고를 합니다.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외

- 단, 날개 의약품의 포장에 없어 의약품표준코드(품명·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의약품 대표코드(품명)·수량대로 양수보고를 합니다.

- ④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폐업하기 전 반품할 마약류 재고를 허가관청에 양도승인 받아 거래업체에 양도하거나, 폐업 이후 20일 이내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을 하여 양수자에게 양도합니다.

\* 자격상실자의 양도승인 결과는 관할기관 공무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양도보고하고 양수자는 양수보고를 합니다.

- ⑤ 허가관청 공무원이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거한 경우, 아래와 같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를 차감합니다.

### 📄 마약류 수거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재고 반영 방법

- 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로그인
- ② 상단 [보고] 메뉴 → [기타출고처리] 기능을 선택

- ③ 상단 우측 '신규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 ④ 입력화면의 '출고구분'을 '공무원수거' 선택
- ⑤ 상대 거래자 정보(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명, 허가종별,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 및 수거물품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합니다.

## 10 마약류 임상시험 취급보고

-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품목 허가된 마약류로 임상시험(4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대상자(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 임상시험용 마약류를 투약합니다.

\* 품목허가 전(1~3상)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종료 후 한꺼번에 사용보고

- ② 각 시험대상자별로 임상시험용 마약류 조제(투약)일, 수량, 제조번호 등 KGCP에서 정한 기록을 작성하고 재고를 관리합니다.
- ③ 해당 임상시험이 종료되면 취급의료업자(시험책임자) 또는 마약류관리자는 임상시험용 마약류의 총 사용량을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보고를 합니다.

### ① 참고사항

- ▶ 임상시험 관리약사가 마약류관리자로서 역할을 경우 마약류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 임상시험용 마약류는 일반관리대상에 해당하며, 임상시험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1건으로 사용보고 합니다.



## 11 의료기관 개설변경 등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정 관리

①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의료법」에 따라 기존 개설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개설허가(신고)번호가 동일하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업체 정보를 변경합니다.

- 다만, 변경된 대표자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정 변경 방법

- ① 새로운 대표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업체 관리자에게 승인 받습니다.
- ② 종전 계정 관리자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마스터 권한 이관을 요청합니다.
- ③ 새로운 대표자는 마스터 권한을 부여받으면 해당 계정으로 취급보고를 할 수 있으며, 종전 계정 관리자는 회원탈퇴를 합니다.

② 동일한 의료기관이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관할 허가 관청이 바뀌고 새로 개설허가(신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새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새로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변경 이전 계정에 있는 마약류 재고를 새로 가입한 계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 ① 신규 계정으로 마약류 재고 이동 방법

- (종전 계정) ① 보고유형: 기타출고처리 ② 출고구분: 동일업체전입전출  
③ 수량: 남은 마약류 전체량
- (신규 계정) ① 보고유형: 기타입고처리 ② 입고구분: 동일업체전입전출  
③ 수량: 기타출고한 마약류 수량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마약류 행정처분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 반영 절차

- ①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으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미보고한건을 보고 완료하여 재고를 조정합니다.
- ② 다만, 정상적인 취급행위가 아닌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기타입·출고처리'로 재고를 조정합니다.

### i 행정처분 이후 시스템에서 재고반영 절차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재고를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 ⇨ **기타출고처리**
  - (사유) 행정처분 문서번호를 기재
  - (출고구분) “재고보정(행정처분 결과반영)” 선택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재고를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 **기타입고처리**
  - (사유) 행정처분 문서번호를 기재
  - (입고구분) “재고보정(행정처분 결과반영)” 선택

- ③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재고 차감한 내역을 취급자의 연계소프트웨어에서도 반영하여 재고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의료기관용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III

## 마약류 취급보고 설명

# Ⅲ 마약류 취급보고 설명

## 1. “마약류 취급의 보고” 정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이라 합니다)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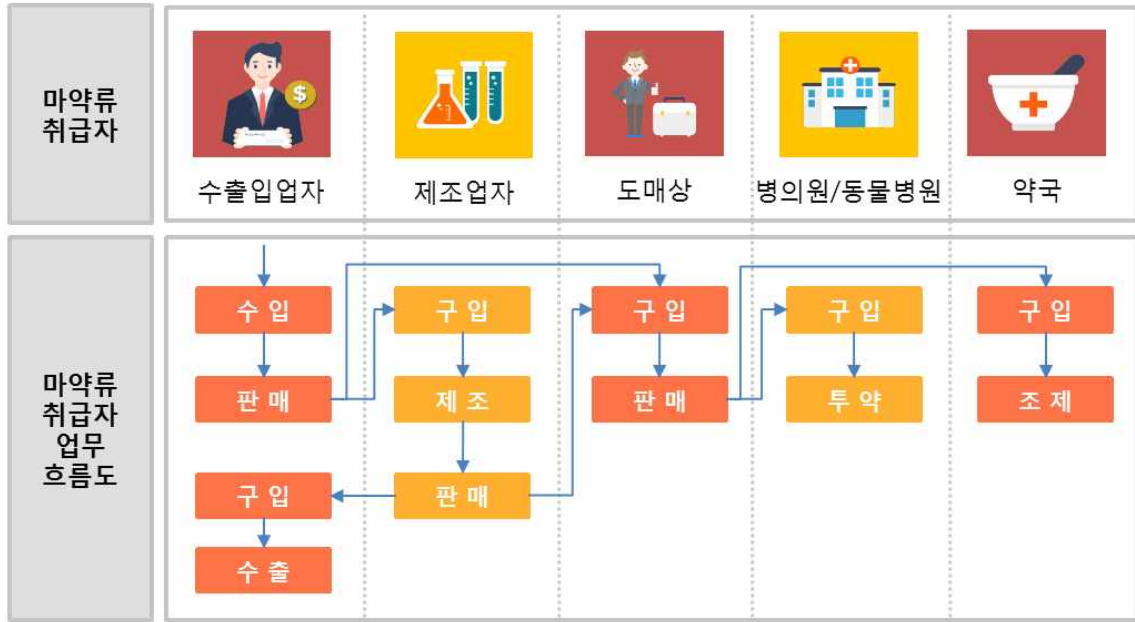
##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전체 취급 사항(수출입·제조·판매 등)을 보고·저장·모니터링 하는 마약류 통합 보고·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흐름도 〉



### 3. 주요 업무흐름도



### 4. 보고주체

- 「마약류 관리법」상 허가·지정받은 취급자 및 취급승인을 받은 자가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보고합니다.
  - 부득이하게 마약류취급자 업체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가 보고 의무자(보고인)를 대신하여 보고하는 경우, 법률상 보고인명 및 담당자명·연락처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취급자 유형	마약류취급자					
	수출입·제조·원료 사용·취급자(예외적)	학술 연구자	도매	소매	의료업자 (관리자 X)	의료업자 (관리자 O)
보고인	대표	학술 연구자	대표	대표	대표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취급자 유형	마약류취급승인자			
	공무용	도핑센터	임상·시제품·품질관리용	항공법·봉사·구호
보고인	기관(부서)장	마약류 취급승인 받은 취급자(담당자) *취급승인 공문에 기재된 취급자		

## 5. 보고대상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18.2.9)한 향정(프로포폴)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향정(중점관리대상 제외)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해외봉사 등)\*가 취급하는 마약·향정
- \* 의료업자가 학술연구자로 허가받거나 취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용)」 참고

## 6. 취급자별 취급보고 유형

취급보고 유형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 승인자
	수출입업	제조업	원료사용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학술연구	
수입 보고	●							
수출 보고	●							
제조 보고		●						
위수탁 입출고 보고		●						
원료사용 보고			●					
판매 보고	●	●		●				
양도 보고	●	●	●	●	●	●	●	●
양수 보고	●	●	●	●	●	●	●	●
구입 보고	●	●	●	●	●	●	●	
조제 보고					●	⊙		
투약 보고						⊙		
사용 보고	●	●	●			●	●	●
폐기 보고	●	●	●	●	●	●	●	●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은 투약보고 대신 조제보고 가능(단, 별도의 마약류 투약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7. 보고방식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보고
  - **(웹보고)** 인터넷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에서 직접 입력·보고하는 방식으로 취급량이 적고 마약류 취급보고용 연계소프트웨어(이하 “연계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파일업로드)** 연계소프트웨어(병·의원에서 사용하는 EMR, OCS 등) 내 마약류 취급 정보를 취급보고 양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파일을 업로드 하여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 연계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보고
  - **(연계보고)** 취급자별로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마약류 취급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별도 입력하지 않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다량·다빈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이를 위한 전산기능 개발이 필요합니다.

### ① 파일업로드와 연계보고의 차이점

- ▶ 연계소프트웨어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 ▶ 파일업로드는 연계SW에서 가능한 파일(CSV, XML, ZIP)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파일업로드 보고”에서 파일을 업로드 하여 보고합니다.
- ▶ 연계보고는 추가로 취급보고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없이 전송하여 보고합니다.

## 8. 보고기한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 보고기한 :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 변경보고기한 : 보고기한 종료일부턴 5일 이내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 보고기한 :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① 참고사항

※ 다음의 사용보고는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괄 보고합니다.

- ▶ **(임상시험 목적)** 취급의료업자가 품목허가 범위 내에서 임상시험(4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을 종료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해외봉사·원조·지원 목적)** 해외봉사 등을 목적으로 취급승인을 받은 경우 봉사 등을 종료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변경보고기한 :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5일 이내

- 보고별 취급일자 기준

취급보고 유형	취급일자(보고 기준일자)
① 구입/양수 보고	입고일자
② 양도 보고	출고일자
③ 사용 보고	해외봉사, 임상시험 종료일자
④ 조제 보고	조제일자
⑤ 투약 보고	투약일자
⑥ 폐기 보고	폐기신청민원 처리일자(공문 시행일자)
⑦ 변경 보고	①부터 ⑥까지 보고기한 종료일자

### ① 보고기한 적용 예시

-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는 취급한 당일·공휴일·토요일 제외하고 기간 산정  
(예) '18.12.31.(월) 취급한 경우, '19.1.2.(수)부터 1일로 계산 ⇒ (7일 이내 보고) '19.1.10.(목)까지
-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 가능  
(예) 12월 취급내역은 1.10.(목)까지 보고

- ▶ **(변경보고)**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5일 이내'는 보고 당일·공휴일·토요일 제외하고 기간 산정  
 (예) '18.12.31.(월) 취급한 경우,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7일 보고기한 종료일인 '19.1.10.(목)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19.1.10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하여 5일 이내 변경보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31	1 신정	2	3	4	5
6 음 12.1 소한	7	8	9	10	11	12 토요일 제외
13 일요일 제외	14	15	16	17	18	19
20 음 12.15 대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 9. 행정처분사항

- 보고의무 위반 시 (법률 제11조제1항)

위반사항	행정처분			
	1차	2차	3차	4차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거짓보고)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허가·지정·승인 취소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또는 허가·지정· 승인 취소	허가·지정· 승인 취소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항목 미보고 및 오류)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또는 허가·지정· 승인 취소	허가·지정· 승인 취소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보고기한 초과)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 승인 취소	허가·지정· 승인 취소

- 재고 불일치 발생 시 (규칙 제21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는 “품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마약 ]

위반사항	행정처분			
	1차	2차	3차	4차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허가지정·승인 취소	

### [ 향정신성의약품 ]

위반사항	행정처분			
	1차	2차	3차	4차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1)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퍼센트 미만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승인취소	허가·지정·승인취소
2)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퍼센트 이상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또는 허가·지정·승인취소	허가·지정·승인취소

### ① 행정처분 감면·감경기준

- ▶ **(감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 ▶ **(감경)**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II. 개별 기준 제9호다목(항목 미보고 및 오류) 또는 라목(보고기한 초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업무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

###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

- ▶ 법 제11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 다만, 이 목의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또는 허가·지정 취소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의료기관용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붙임 1**

**최근 제도 변경사항**

## 붙임 1. 최근 제도 변경사항

### 1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 종료 (~'19.6월)

- 「마약류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은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보고여부 또는 재고차이 확인기준**은 취급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 주의사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⑦항

▶ 조제·처방 등 연계보고 소프트웨어는 보고를 위한 도구입니다. 각 취급 보고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정상보고 여부 및 전산재고는 가능한 매일(소량 취급자는 주 1회 이상)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 ② 보고누락, 항목오입력(변경미보고 해당), 보고기한 초과 중 특히 **보고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오입력, 기한초과는 행정처분 경감이 될 수 있으나 보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③ 행정처분 기준에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는 일련번호·제조번호별이 아닌 “**품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 삼진디아제팜(2밀리그램), 한국화이자제약(주) 자낙스정(0.25밀리그램)

## 2 계도기간 종료 후 중점관리 일련번호/일반관리 제조번호 운영 방침(19.7월~)

- **중점관리대상(마약, 프로포폴)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포함)**

- 전체 취급 보고자는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일련번호를 보고합니다.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약품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 투약·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소진하는 경우에는, 주사제는 **일련번호별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고하고, 주사제를 제외한 약품 제형은 일련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소매업자

\*\* 취급기관 내에서 이동내역을 일련번호별(포장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일련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일반관리대상 제조번호(사용기한 포함)**

- 전체 취급 보고자는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제조번호를 보고합니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제조번호\*\*를 보고합니다.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약품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소매업자

\*\* 제조번호는 제도 시행 시부터 2년간 보고유예

-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 투약·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3 취급보고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개선 ('19.3.12)

-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주요 개정내용

- ▶ 과거 중점관리대상에 비해 엄격하던 일반관리대상 처분기준을 중점관리 대상에 맞춰 합리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 외부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산장애에 따른 누락을 입증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 보고항목 누락·오류 및 보고기한 초과인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업무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경고로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개정사항

- 1. 일반기준의 제8호(처분감면기준) 및 제9호(감경기준)를 다음과 같이 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II. 개별기준 제9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업무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II. 개별기준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개정 전】 과거 기준						【개정 후】 현재 기준				
						위반행위 (1건 기준)	1차	2차	3차	4차
9.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9.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중점·일반	업무정지3월	업무정지6월	허가지정·승인 취소	-	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거짓보고)	기존과 동일			
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점 일반	15일 3월	1월 6월	2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	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	15일	1월	2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중점 일반	7일 1월	15일 2월	1월 또는 허가취소 3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항목 누락·오류)	7일	15일	1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중점 일반	3일 7일	7일 15일	15일 또는 허가취소 1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초과)	3일	7일	15일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마.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마.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기존과 동일			
바. 소지한 <b>향정의</b>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품목별 전월 사용량 3% 미만	경고	7일	15일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바. 소지한 향정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 3% 미만	기존과 동일		
	품목별 전월 사용량 3% 이상	1월	2월	3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19.12월~)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개정되어 '19.12.3.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목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범위	마약	마약과 <b>향정신성의약품</b>
기재 사항	기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추가	<b>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b> (* 동물인 경우 동물 소유자·관리자)

- 자주 묻는 문의사항

##### ① '원내 처방전'에도 처방전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 **처방전 기재사항 의무 적용대상은 '원외 처방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문의하신 '원내 처방전'이 의료기관 내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기 위하여 의사가 조제실로 송부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처방 서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처방전의 기재사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원외 처방전'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② 약국제출용 / 환자보관용 처방전 모두에 기재해야 하는지

➔ **용도에 관계없이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일부 의료현장에서 처방전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처방전을 규정하는 「의료법」에서는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처방전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③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의료법」의 처방전 양식에 **소재지 기재란이 없음 등을 감안하여, 요양기관기호 기입으로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요양기관기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심평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병·의원 등의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 심평원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등을 확인 가능한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④ 외국인 환자는 환자 정보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 **외국인 환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의 성명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성명' 란에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만** 기재하여야 하며, 영문명은 가급적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의 전체 명칭을 기재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의료기관용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붙임 2

용어 정의

## 붙임 2. 용어 정의

- **마약류** 「마약류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라 함) 및 대마를 말합니다.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법」 제2조제5호 각목에 따라 마약류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소매업자(약국),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원, 치과병원,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등을 말합니다.
  - ①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의 제조(제제 및 소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 ②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
  - ③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④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⑤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마약류관리자가 2인 이상 경우 병원 내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함
  - ⑥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⑦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⑧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 관리법」 제3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 ▶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취급하려는 경우
  - ▶ 의료봉사 단체, 의료기관 등이 해외 의료봉사·원조·지원을 위해 취급하는 경우
  - ▶ 도핑검사, 「항공안전법」에 따른 구급의료용품 탑재 등
- **일련번호**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약품 개별 식별을 위해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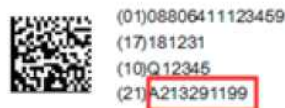
\* 유통되는 최소한의 규격(예: 30정/병, 5앰플/갑, 5패취/갑, 500mL/병 등)으로 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 형태로 부착되어 있으며, “바코드”는 응용지시자(AI) “(21)” 이후 20자리 이하 숫자 또는 문자를 “일련번호” (“ 표시”)라 합니다.

코 드 자릿수	2	14	2	6	2	20 이하	2	20 이하
내 용	AI 상품식별코드	GS1 상품코드	AI 최대유통일자	YYMMDD	AI 로트번호	제품의 생산라인	AI 일련번호	제품의 일련번호
부여 예	(01)	08806411123459	(17)	181231	(10)	Q12345	(21)	A213291199

< 일련번호를 GS1-128 바코드에 적용한 경우 >



< 일련번호를 GS1 Datamatrix 바코드에 적용한 경우: 2가지 예시 >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를 말합니다.  
(예시) 1/2앰플 처방 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반납 마약류** 입원환자에게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투약되지 않고 의사의 반납처방을 근거로 약제부서로 반납된 마약류를 말합니다.
- **지참 마약류** 입원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말합니다.

-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유효기한이 경과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마약류를 말합니다.
- **사고 마약류**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①재해에 의한 상실, ②분실 또는 도난, ③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발생한 마약류를 말합니다.
- **비상마약류** 마약류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하게 투여가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된 마약류(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를 말합니다.
- **마약류 관리 보조자**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자(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마약, 사회적으로 오남용 문제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관리가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합니다.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외에 **제조번호별 수량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합니다.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성분 또는 품목이라도 표준품, 동물용 마약류, 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가 취급하는 마약류는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로 관리합니다.

- **품목코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품목별로 부여된 고유식별번호를 말합니다. 다만, 의료용 완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 표준코드\*를 말합니다.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공고한 “의약품 표준코드 목록”

-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회원 가입한 업체별로 부여한 9자리 고유식별번호(예시: H+숫자 8자리)입니다.
- **의약품 표준코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 국가식별코드, 의약품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및 의약품수입자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 **의약품 대표코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함량 포함 의약품을 대표하는 코드로, 의약품표준코드와 동일하나 포장단위 구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품목기준코드	의약품표준코드	제품명	제약사명	포장형태	날개수량	날개단위
201100955	8806498052109	○○프로포폴주1%(10mℓ)	○○제약(주)	대표코드	1	바이알
	8806498052116	○○프로포폴주1%(10mℓ)	○○제약(주)	개	1	바이알
	8806498052123	○○프로포폴주1%(10mℓ)	○○제약(주)	박스	5	바이알
	8806498052208	○○프로포폴주1%(20mℓ)	○○제약(주)	대표코드	1	바이알
	8806498052215	○○프로포폴주1%(20mℓ)	○○제약(주)	개	1	바이알
	8806498052222	○○프로포폴주1%(20mℓ)	○○제약(주)	박스	5	바이알

- **제조번호** 일정한 제조단위분에 대해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 숫자·문자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의약품 용기·포장에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 **수율** 이론 생산량에 대한 실생산량의 백분율을 말합니다.
- **수입보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향정을 수입한 내역(상대자, 수입정보,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출보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향정을 수출한 내역(상대자, 수출정보,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조보고**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향정을 제조한 내역(제조정보, 원료 및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료사용보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마약·향정 원료를 사용한 내역을(마약류 원료 및 생산된 비마약류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조 위·수탁자 간 입출고 상황보고** 마약류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위·수탁 업무범위 내에서 제조한 마약·향정에 대해 위·수탁자간 입·출고한 내역(상대자,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매보고** 제약사(마약류제조업자·수출입업자)나 마약류도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에게 마약·향정을 판매한 내역(상대자, 판매한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반품 등의 목적으로 관할 허가관청에 양도 승인을 받아 거래업체(제약사 및 마약류도매업자)에 양도한 내역(상대자 정보, 양도한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수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양도 승인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향정을 양수받은 내역(상대자 정보, 양수받은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입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제약사(제조업자·수출입업자)나 도매업자에게 마약·향정을 구입한 내역(상대자, 구입한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용보고**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소매업자 제외) 및 취급승인자가 품질관리, 학술연구, 공무용 등의 목적으로 마약·향정을 사용한 내역(사용정보,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제보고**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마약·향정을 조제한 내역(처방기관 정보, 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가 “조제보고”하고, 해당 마약류 투약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투약보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투약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투약한 내역(처방기관 정보, 투약정보, 제품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폐기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폐기대상 마약·향정에 대하여 허가관청에 폐기신청·처리한 내역(폐기정보, 제품 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8 서식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폐기대상)의 폐기보고는 투약 또는 조제 보고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 후 폐기량’란에 입력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의료기관용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붙임 3

마약류 취급보고  
따라하기 매뉴얼

## 붙임 3. 마약류 취급보고 따라하기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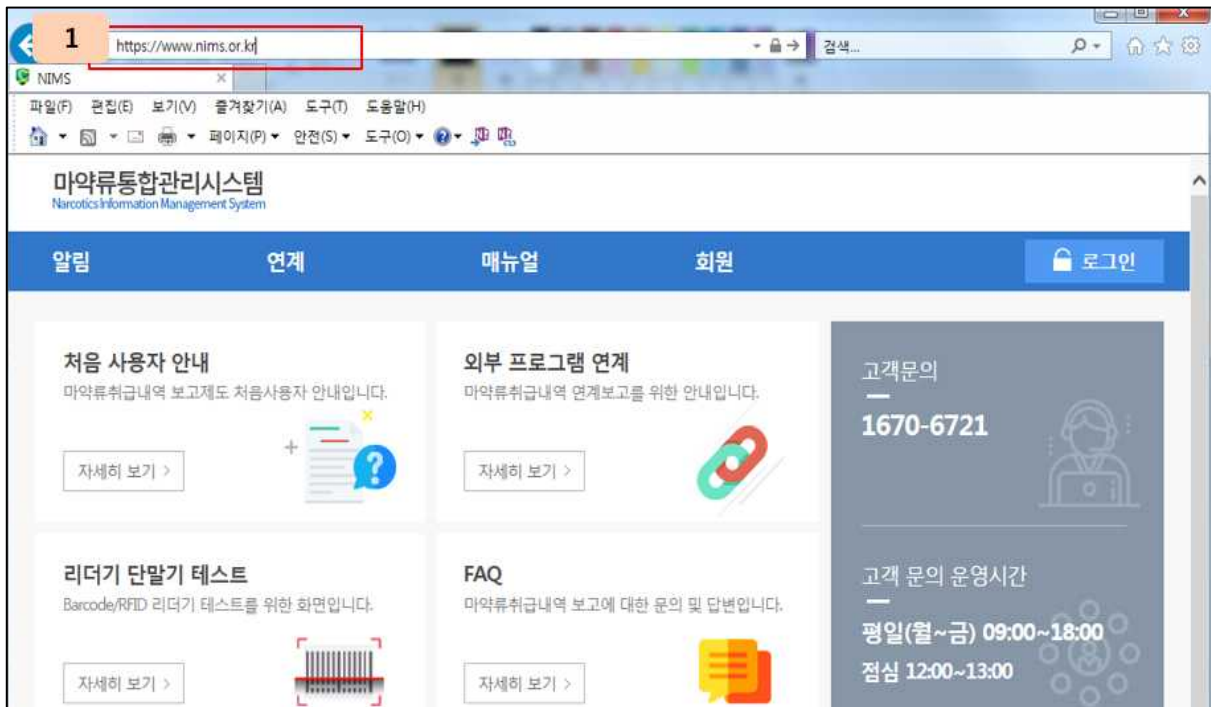
### I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목차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하기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확인하기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내역 확인하기
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따라하기
  - ▶ 구입보고
  - ▶ 투약보고
  - ▶ 양도보고
  - ▶ 폐기보고
  - ▶ 변경보고
  - ▶ 신원미확인자 변경보고
  - ▶ 처방전 변경에 따른 변경보고
  - ▶ 취소보고
  - ▶ 저장소 이동처리
  - ▶ 동일업체 전입전출 처리
  - ▶ 연계보고 결과조회
  - ▶ 보고오류 결과조회

##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하기



(1) 인터넷 검색창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입력하여 검색된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2) 인터넷 주소창에 www.nims.or.kr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한다.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다.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약류 취급보고(구입·조제·투약·폐기 등) 업무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

②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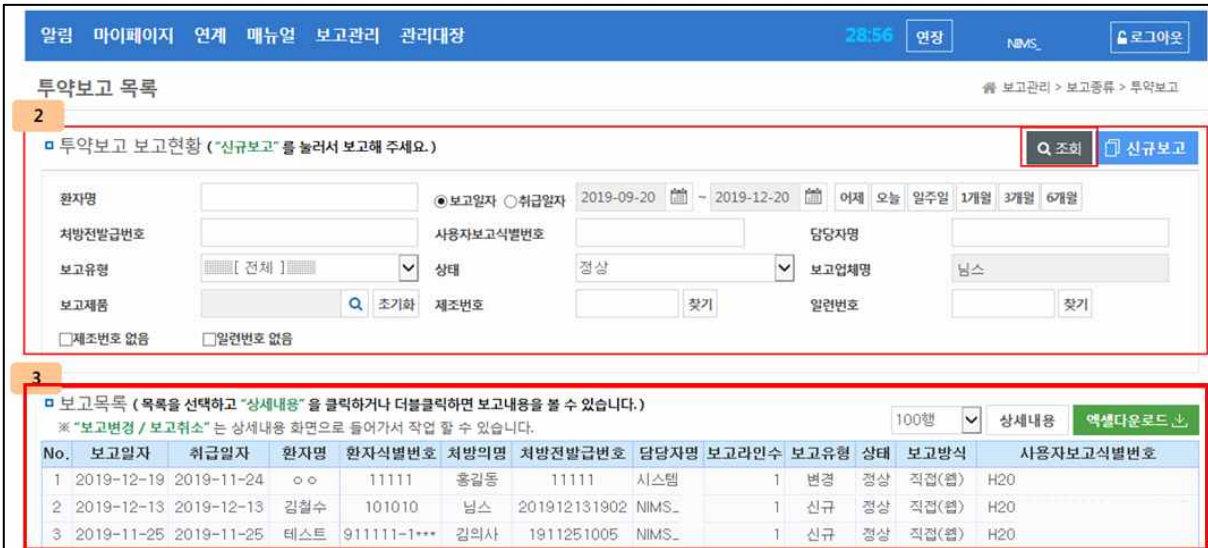
\* 공인인증서 등록·갱신하거나 계정 관리할 때 사용



##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고내역 확인하기



(1) [보고관리]에서 조회하려는 취급보고 유형을 선택한다.



(2) [투약보고 보고현황] 메뉴에서 구분값\*을 입력하여 조회한다.

\* 환자명, 보고일자/취급일자, 처방전발급번호, 사용자보고식별번호, 담당자명, 보고유형 등

(3) [보고목록]에서 조회되는 보고내역을 확인하고, 상세한 보고 내용은 보고내역을 선택한 후 '상세내용'을 누르거나, 보고내역을 직접 두 번 빠르게 눌러 상세한 취급보고 화면을 조회한다.

\* [상세내용] 화면에서 변경보고/취소보고 가능

###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재고내역 확인하기

#### ● 의약품별 재고 확인

알림 마이페이지 연계 매뉴얼 보고관리 회원승인 관리대장 26:10 연장 로그인

제품(의약품)별재고 관리대장 > 재고조회 > 제품(의약품)별재고

1 제품군(대표코드)재고  
제품(의약품)별재고

제품(의약품)별 조회 Q 조회

2

보고업체명 NIMS병원 제품명 [선택] 초기화 저장소 [전체]

기준월 2019-12 조회구분  날개  월별 제품별수불 증점/일반 [전체]

※ "제품상세정보"를 클릭하여 선택 제품의 제조번호/일련번호 재고를 확인합니다.  재고있음 1,000행 제품상세정보 엑셀다운로드 출력

No.	제품명	제품코드	중점관리여부	전월이월수량	입고수량	출고수량	현재고총수량	(이동입고)	(이동출고)	단위
1	노스판페취 10µg/h(부프레노르핀) (10		일반관리대상	32	0	-14	18	0	0	매
2	노스판페취 20µg/h(부프레노르핀) (20		일반관리대상	28	0	0	28	0	0	매
3	노스판페취 5µg/h(부프레노르핀) (5mg)		일반관리대상	157	360	-195	322	0	0	매
4	뉴신타서방정 100밀리그램(타펜타돌염		중점관리대상	2,838	7,800	-5,008	5,630	0	0	정
5	뉴신타서방정 50밀리그램(타펜타돌염		중점관리대상	2,884	3,900	-3,975	2,809	0	0	정
6	뉴신타사이알정 50밀리그램(타펜타돌		중점관리대상	4,086	4,800	-4,592	4,294	0	0	정
7	달아돔정(플루라제팜염산염) (15mg)		일반관리대상	947.5	500	-179	1,268.5	0	0	정
8	데파스정 0.5mg (0.5mg)		일반관리대상	1,245.95	2,800	-1,153.9	2,892.05	0	0	정
9	데파스정 1mg (1mg)		일반관리대상	2,126	800	-378	2,548	0	0	정
10	듀로제시디트렌스파취 100µg/h(펜타닐		중점관리대상	430	500	-254	676	0	0	매

(1) [관리대장] → [제품(의약품)별 재고]를 선택한다.

(2) '조회' 메뉴에서 구분값(제품명, 저장소, 기준월 등)을 입력하여 조회한다.

\* '재고있음'을 누르면 해당 기준월에 재고가 있는 제품만 조회됨

● 제조번호 및 일련번호별 재고 확인

관리대장

제조번호/일련번호별 조회

보고업세명: [ ]

기준월: 2019-12

조회구분:  날개단위재고  유통단위조회

제조명: [ ]

제조번호: [ ]

조회범위:  제품  재고

재고있음  1,000행

제품상세정보 엑셀다운로드 출력

제품명	제품코드	제조번호	일련번호	입고수량	현재고총수량	(이동입고)	(이동출고)	단위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K08001 소계		167	0	-50	117	0 앰플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K10004 소계		0	500	0	500	0 앰플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K10002 소계		0	450	0	450	0 앰플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K07001 소계		2	0	0	2	0 앰플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K10001 소계		1,450	0	-63	1,387	0 앰플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H02002 소계		-2,400	0	0	-2,400	0 앰플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 소계		4,299	0	0	4,299	0 앰플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계합				1,619	1,500	-113	3,006	0 앰플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K10003 소계		0	550	0	550	0 앰플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H02001 소계		-1,249	0	0	-1,249	0 앰플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H02003 소계		-650	0	0	-650	0 앰플
테파스겔0.5mg (0.5mg) 계합				500	2,600	-207.95	2,892.05	0 정

(1) [관리대장] > [제조/일련번호별 재고]를 선택한다.

(2) 구분값(제조번호, 일련번호, 기준월 등)을 입력하여 조회한다.

\* '재고있음' 선택할 경우, 기준월에 재고가 있는 제품만 조회 가능

제조번호/일련번호별 조회

보고업세명: [ ]

기준월: 2019-12

조회구분:  날개단위재고  유통단위조회

제품명: [ ]

제조번호: K10002

조회범위:  제품별 조회  제조번호별 조회  일련번호별 조회

재고있음  1,000행

제품상세정보 엑셀다운로드 출력

제품명	제품코드	제조번호	일련번호	전월이월수량	입고수량	출고수량	현재고총수량	(이동입고)	(이동출고)	단위
아티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 (1mg)		K10002 소계		0	3,000	0	3,000	0	0	정
아티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 (1mg)				0	3,000	0	3,000	0	0	정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계합				0	450	0	450	0	0	앰플
아티반주사(로라제팜) (0.5ml)		K10002 소계		0	450	0	450	0	0	앰플

(3) 특정 제조번호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누르면 제조번호별·일련번호별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

## 4-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입보고 따라하기

### ● 직접 입력하여 구입보고

구입보고 신규보고
29:49
연장
입시저장
입시저장 가져오기
4
보고완료
닫기

**1-1** 본정보

보고일자	2019-12-27	담당자명	닉스관리자	법적보고의무자명	NIMS대표자
취급일자	2019-12-24	담당자전화번호	02-1111-2222	담당자휴대폰번호	010-1234-1234
보고사유	해당사항없음				
비고					

**1-2**

\* 담당자휴대폰번호 SMS문자 수신 가능

□ 상대 마약류취급자 정보

**2** \* 구입대상 목록조회 버튼을 눌러 상대업체의 판매내역을 확인하여 구입보고가 가능합니다. 구입대상 목록조회

상대업체	NIMS테스트도매	찾기	NIMS97	상대업체 저장소	기본저장소 / S0001
------	-----------	----	--------	----------	---------------

□ 구입정보 (선택라인: 1라인)

\* 라인을 선택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b>3-2</b> 명	명문인산코데인정 (20mg)	찾기	8806498014718	제품재고조회	중점/일반 관리구분	중점관리대상
제조번호	12345	유효기한	2022-12-01	저장소	기본저장소 / S0001	알괄적용
일련번호	A123456	제품 최소유통단위	1병	제품 날개단위	30정	
<b>3-3</b> de / RFID		최소유통단위수량	1 병	날개단위수량	0 정	

※ M: 중점관리대상 일련번호 한시적 제외 가능  
 \*6년도 이전 생산제품(일련번호 의무표기 이전)이거나, 리더기 없이 RFID 부착제품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통단위수량은 개봉하지않은 박스/병/통 등의 수량입니다.  
 예) 유통단위/날개단위: 1박스 + 5정 = 최소유통단위수량: 1, 날개단위수량: 5를 입력  
 예) 유통단위 없는 경우: 10정 = 최소유통단위수량: 0, 날개단위수량: 10를 입력  
 예) 날개단위 없는 경우: 2박스 = 최소유통단위수량: 2, 날개단위수량: 0를 입력

추가
라인복사
삭제
초기화
Barcode / RFID 스캔
제품 역선택로드

□ 구입정보 목록

\* 목록보기 크기 설정 5행 **3-5** 문로드

No.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최소유통단위수량	날개단위수량	입력상태
1	명문인산코데인정 (20mg)	8806498014718	기본저장소 / S(	12345	A112345	2021-12-31	1 병	0 정	정상
2	명문인산코데인정 (20mg)	8806498014718	기본저장소 / S(	12345	A123456	2022-12-01	1 병	0 정	정상

### (1) 기본정보 입력

① 취급일자 : 마약류를 입고한 날짜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② 담당자명·법적보고의무자명을 입력한다.

- 담당자명 : 법적 보고자가 보고 업무를 위임한 담당자(실무자) 이름
- 법적보고의무자명 : 법적 보고의무를 가진 마약류취급자(대표자) 이름

### (2) 상대 마약류취급자 입력

① 상대업체 [찾기] 선택 ⇒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한 ‘업체명’ 또는 ‘취급자식별번호’를 입력하여 검색 ⇒ 상대업체명 확인 후 선택



### (3) 구입정보 입력

- ① 제품명 [찾기] 선택 ⇒ 구입한 물품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제품명’ 또는 ‘제품코드’ 입력하여 검색 ⇒ 해당 제품 선택
- ② 해당 제품의 마약류 포장지에 있는 제조번호, 유효기한을 확인하여 입력한다.
- ③ 구입한 마약류가 중점관리대상인 경우 포장지에 기재된 ‘일련번호’ 가독문자를 입력한다.

\* 일련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M’ 입력이 가능

- 1) 2016년도 이전에 생산된 제품(일련번호 의무표기 이전) 등록할 경우
- 2) 리더기를 보유하지 않은 취급자가 RFID tag 부착제품을 보고하는 경우

### i RFID tag가 부착된 제품의 일련번호 보고 방법

구입정보 (선택라인: 1라인)		※ 라인을 선택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제품명	명문인산코데인정 (20mg)	찾기	8806498014725	제품재고조회	5
제조번호 ?	직접입력	찾기	유효기한	직접입력	
일련번호 ?	2147483882	1	제품 최소유통단위 ?	1 병	
Barcode / RFID		찾기	최소유통단위수량 ?	0 병	

#### 일련번호 스캔

□ 아래 입력창을 클릭 후 일련번호를 스캔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키 영문모드로 입력) 초기화

2

3036198188017040800000EA

□ Barcode/RFID 검증 결과

No	Barcode/RFID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간	상태
1	30361981880170408000	명문인산코데인정 (20mg)	880649801473			2147483882		성공

- ① ‘Barcode/RFID 칸’ 우측의 ‘찾기’ 버튼 선택
- ② ‘일련번호 스캔’ 팝업창이 뜨면 리더기로 RFID tag 또는 바코드 스캔
- ③ 스캔을 완료하면 ‘Barcode/RFID 검증’ 선택
- ④ ‘Barcode/RFID 검증 결과’ 목록에서 모든 값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일련번호 적용’ 선택
- ⑤ 마약류 제품 실물에 기입된 제조번호, 유효기한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

④ 구입한 수량을 확인하여 [최소유통단위수량]에 입력한다.

\* 날개단위수량에 구입한 수량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 ① 최소유통단위수량과 날개단위수량의 구별방법

- ▶ **최소유통단위수량:** 제품이 유통되는 최소한의 규격(예: 30정/병, 5앰플/갑, 500ml/병 등)의 수량
- ▶ **날개단위수량:** 최소유통단위를 개봉하여 들어있는 개별 날개 수량(예: 정, 앰플, 바이알 등)

⑤ 구입정보목록에서 입력한 정보 및 입력상태(정상/누락)를 확인한다.

(4) [보고완료]를 선택하여 보고를 완료한다.

### ● 거래업체 판매보고 내역을 조회하여 구입보고

### ① 참고사항

‘구입대상 목록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거래업체에서 판매보고한 내역을 조회하여 구입보고 할 수 있음

구입보고 신규보고
29:31
연장
임시저장
임시저장 가져오기
보고완료
닫기

□ 기본정보 \* 담당자휴대폰번호 SMS문자 수신 가능

보고일자	2019-12-27	담당자명	병원담당자	법적보고의무자명	NIMS대표자
취급일자 ?	2019-12-27	담당자전화번호	02-1111-2222	담당자휴대폰번호	010-1234-1234
보고사유	해당사항없음				
비고					

□ 상대 마약류취급자 정보 \* 구입대상 목록조회 버튼을 눌러 상대업체의 판매내역을 확인하여 구입보고가 가능합니다. 구입대상 목록조회

상대업체	업체명 입력 후 엔터 또는 찾기	찾기	상대업체 저장소	재고등록 / S0001
------	-------------------	----	----------	--------------

(1) 구입보고 신규보고 화면에서 상대 마약류취급자 정보 우측 상단에 [구입대상목록조회]를 선택한다.

### 구입대상 목록조회

구입대상 목록조회
선택

2-1 판매업체
조회기간  보고일자  취급일자 2019-12-20 ~ 2019-12-27 어제 오늘 일주일 1개월
 취소보고 포함

상대업체가 판매보고한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판매자가 미보고 시 해당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며, 판매보고 내역이 있을 시 판매보고 상세내역과 실물의 동일여부를 확인 후 보고합니다.

Q 검색

2-2 업체보고목록

구입보고를 하였으나 판매보고의 일련번호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련번호 없이 구입보고 한 경우, 그리고 실제 구입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미보고'로 표시된 보고건을 선택하실 때에는 실제 구입보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	보고일자	취급일자	상대업체식별번호	업종유형	상대업체명	담당자명	보고라인	보고구분	사용자보고식별번호	참조사용자보고식별번호	보고여부
1	2019-12-26	2019-12-26		마약류도매업	(주)		240	신규			기보고
2	2019-12-26	2019-12-26		마약류도매업	(주)		20	신규			기보고
3	2019-12-26	2019-12-26		마약류도매업	(주)		50	신규			기보고
4	2019-12-26	2019-12-26		마약류도매업	(주)		190	신규			기보고
5	2019-12-24	2019-12-24		마약류도매업	(주)		804	신규			기보고

[ 총 건수 : 8 건 ]

\* 상대업체 보고 상세내역 (일련번호가 있는 경우만 보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최소유통단위수	날개단위수량
1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µg/h(펜타닐)		기본저장소			2021-03-20	1 박스	0 매
2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µg/h(펜타닐)		기본저장소			2021-03-20	1 박스	0 매
3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µg/h(펜타닐)		기본저장소			2021-03-20	1 박스	0 매

## (2) 상대업체 및 보고목록 조회

- ① 팝업창이 뜨면 판매업체, 조회기간 등으로 검색하여 거래업체에서 판매보고한 내역을 조회하고, 구입보고 할 내역을 선택한다.
- ② 자동 입력된 구입보고를 확인하여 [보고 완료]를 누른다.

### i 구입대상 목록조회에서 '미보고'가 뜨는 이유

- ① 실물을 구입하였으나 구입보고를 실제로 하지 않은 경우
- ② 판매보고 내역과 구입보고 내역의 일련번호가 다른 경우
- ③ 일련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만 보고한 경우

\* 판매보고 내역과 구입보고 내역의 모든 정보가 정확히 일치할 경우에만 '기보고'로 뜨게 됨

## 4-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투약보고 따라하기

### 참고사항

조제보고 항목은 투약보고와 동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약보고 신규보고
24:36
연장
임시저장
임시저장 가져오기
보고완료
닫기

4

**1 기본정보** \* 담당자휴대폰번호 SMS문자 수신 가능

보고일자	2019-12-27	담당자명	병원관리자	법적보고의무자명	NIMS대표자
취급일자	2019-12-24 <span style="font-size: small;">오늘 -1일</span>	담당자전화번호	02-1111-2222	담당자휴대폰번호	010-1234-1234
비고					

**2-1 처방 정보** **2-2**

환자명	김중순	찾기	처방의명	김의사	찾기	처방기관명	닐스병원	찾기	E0999
환자식별번호구분	선택 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사회보장번호(SSN) 기타 무명년 무명년 복지 보호시설 등 입소번호		면허증별	의사		처방전범급번호	2019122412345		
환자식별번호			면허번호	제1		질병분류기호	z00.0	찾기	

\* 질병분류기호가 여러 개일 경우는 "/"로 구분하여 입력

**3-1 투약정보 (선택라인:1)** **3-2** \* 라인을 선택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제품명/제품코드	부광미다졸람주사 (3mg)	찾기	8806422006925	제품재고조회		1회투여량	1 앰플
저장소	테스트창고 / S000	알괄적용	중점/일반 관리구분	일반관리대상		1일투여횟수	1 회
제조번호	12335	찾기	유효기한	2021-04-01		총투여일수	1 일
일련번호	11111	찾기	날개단위	10 앰플		방향	1 앰플
Barcode / RFID		찾기	투약수량	1 앰플		사용후폐기량	0 앰플

\* 제품코드 확인후, 일련번호가 훼손된 경우는 [M]버튼으로 입력하여 보고합니다.

\* 투약정보 목록
\* 목록보기 크기 설정 5행
엑셀다운로드

No.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투약수량	1회투여량	1일투여횟수	총투여일수	총처방량	사용후폐기	입력상태
1	부광미다졸람주사 (3mg)	8806422006925	테스트창고	12335	11111	2021-04-01	1 앰플	1 앰플	1	1 앰플	0 앰플	0 앰플	정상

### (1) 기본정보 입력

- ① 취급일자(마약류를 입고한 날짜)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② 담당자명·법적보고의무자명을 입력한다.
  - 담당자명 : 법적 보고자가 보고 업무를 위임한 담당자(실무자) 이름
  - 법적보고의무자명 : 법적 보고의무를 가진 마약류취급자(대표자) 이름

### (2) 환자 정보 입력(환자명·환자식별번호)



- ① 마약류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이름, 환자식별번호를 입력한다.
- 환자명은 직접 입력하거나 일부 환자명을 입력한 다음 [찾기]를 눌러 검색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문환자는 조회가능)
  - 환자식별번호는 다음의 구분값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한다.

### **i 환자식별번호 구분값**

#### **<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환자식별번호 >**

- ① 주민등록번호(내국인)      ②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③ 여권번호

#### **< 기타 보고 가능한 환자식별번호 >**

- ④ 사회보장번호(SSN) [별도의 신원등록번호 체계를 가진 주한미군]  
 ⑤ 복지시설입소번호 [복지시설 입소자]  
 ⑥ 무명남/무명녀 [신생아, 의식불명 응급환자 등]  
 ⑦ 기타 [위 6가지에 해당되지 않아 보고할 수 없는 경우]

- ②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 정보·환자 질병분류기호를 확인하여 입력한다.

### **(3) 투약 정보 입력**

- ① 처방전 및 실물의 포장지에 있는 마약류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한다.
- 투약한 마약류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제품코드를 검색하여 선택한다.
  - \* 제품명 검색 결과값에 여러 개가 나오면 제품의 표준코드 및 최소유통단위를 확인하여 선택한다.
  - 투약한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한다.

## 📄 제품 재고조회 기능 활용하여 보고하기

### ① 제품명/제품코드 입력 후, '제품재고조회' 선택

제품 재고 정보								
□ 제품 상세정보 (재고의 기준은 날개단위재고이며, 유통단위재고는 참고정보입니다.)								
제품명	달마동정(플루라제팜염산염) (15mg)			제품코드	8806			
마약류구분	항정	제품구분	완제(품목)	업체명				
제품 최소유통단위	1 병	제품 날개단위	500 정	중점/일반 관리구분	일반관리대상			
□ 제품 현재고 (유통단위 박스 병 등을 개봉하여 낱알을 사용한 경우는 유통단위재고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고조회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날개단위로 조회 <input type="radio"/> 유통단위로 조회			현재고총수량	1,268.5 정			
□ 저장소 > 제조번호별 재고현황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button" value="엑셀다운로드"/>			□ 일련번호별 재고현황 <input type="button" value="엑셀다운로드"/>					
No.	저장소	제조번호	유효기한	재고수량	No.	일련번호	재고수량	
1	기본저장소	S005	2021-06-24	194 정	1	S0050	194 정	
2	기본저장소	T0	2022-03-24	100 정				
3	기본저장소	T0	2022-03-24	974.5 정				
				[ 총 건수 : 3 건 ]				
				[ 총 건수 : 1 건 ]				

※ 제조번호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일련번호가 조회됩니다.

### ② 재고로 있는 제품의 제조번호 및 일련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 자동입력

\* 하나의 처방전에 근거하여 제조번호나 일련번호가 다른 마약류를 조제·투약한 경우 '추가'를 눌러 조제정보 목록에 라인을 추가하여 각 제조번호·일련번호별로 투약한 양을 입력하여 보고

### ② 투약정보(1회 투여량·투여횟수·투여일)를 처방전을 근거로 입력한다.

## 📄 (예시) 주사제 1앰플 중 일부를 사용한 마약류 처방의 경우

### ▶ 1회 0.8앰플, 1일 1회, 1일 투여 처방의 경우,

⇒ (투약보고) 1회 투여량 (0.8앰플), 1일 투여횟수 (1회), 일수 (1일)

- ① 투약 후 잔량을 자체 폐기하지 않는 경우, 투약수량 (0.8앰플) 으로 표시 (재고는 0.8앰플 차감)
- ② 조제 후 잔량을 자체 폐기하는 경우, 투약수량 (1앰플), 사용후폐기량(0.2앰플) 으로 표시 (재고는 1앰플 차감)

### ③ 실제 투약한 수량을 투약수량(재고 차감되는 양)에 기재한다.

### ④ 투약 후 남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사용후 폐기량] 란에 입력

### ⑤ 투약정보목록에 입력한 제품정보와 입력상태(정상/누락)를 확인한다.

### (4) [보고완료] 선택하여 투약보고를 완료한다.

### 4-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양도보고 따라하기

양도보고 신규보고
30:07
연장
임시저장
임시저장 가져오기
보고완료
닫기

4

**1 기본정보** \* 담당자휴대폰번호 SMS문자 수신 가능

보고일자	2019-12-27	담당자명	남스담당자		법적보고의무자명	NIMS대표자
취급일자 ?	2019-12-23	담당자전화번호	02-1111-2222		담당자휴대폰번호	010-1234-1234
보고사유	해당사항없음					
비고	마약류 의약품을 원소유자(NIMS테스트도매)에 반품					

**2 마약류취급자 정보**

상대업체	NIMS테스트도매	찾기	NIMS97	상대업체 저장소	기본저장소 / S0001
양도구분	반품양도				

**3 양도정보 (선택라인: 1라인)** ※ 라인을 선택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제품명	펜타덤패취12µg/h(펜타닐) (1.26mg)	찾기	8806227003426	제품재고조회 ?	중점/일반 관리구분	중점관리대상
제조번호 ?	12345	찾기	유효기한	2021-12-01	저장소 ?	기본저장소 / S0001
일련번호 ?	A121212	찾기	제품 최소유통단위 ?	1박스	제품 날개단위 ?	5매
Barcode / RFID		찾기	최소유통단위수량 ?	1 박스	날개단위수량 ?	0 매

※ 유통단위수량은 개봉하지 않은 박스/병/통 등의 수량입니다.  
 예) 유통단위/날개단위 : 1박스 + 5매 = 최소유통단위수량 : 1, 날개단위수량 : 5를 입력  
 예) 유통단위 없는 경우 : 10매 = 최소유통단위수량 : 0, 날개단위수량 : 10를 입력  
 예) 날개단위 없는 경우 : 2박스 = 최소유통단위수량 : 2, 날개단위수량 : 0를 입력

추가
라인복사
삭제
초기화
Barcode / RFID 스캔
제품 역셀입로드

**4 양도정보 목록** \* 목록보기 크기 설정 5행

No.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최소유통단위수량	날개단위수량	입력상태
1	펜타덤패취12µg/h(펜타닐) (1.26mg)	8806227003426	기본저장소 / S(	12345	A121212	2021-12-01	1 박스	0 매	정상

#### (1) 기본정보 입력

- ① 취급일자 : 마약류를 입고한 날짜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② 담당자명·법적보고의무자명을 입력한다.
  - 담당자명 : 법적 보고자가 보고 업무를 위임한 담당자(실무자) 이름
  - 법적보고의무자명 : 법적 보고의무를 가진 마약류취급자(대표자) 이름

#### (2) 상대 마약류취급자 정보 입력

- ① 상대업체 [찾기] 선택 ⇒ 상대업체의 ‘업체명’ 또는 ‘취급자식별번호’ 입력하여 검색하여 선택한다.
- ② 양도구분값에 해당 마약류를 양도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 양도 구분값

- ① 판매양도      ② 허가양도      ③ 폐업양도      ④ 회수대상 마약류 양도양수
- ⑤ 품질관리양도      ⑥ 자격상실로 인한 대리신고 양도양수
- ⑦ 보고의무가 없는 상대자 양도양수      ⑧ 반품양도      ⑨ 위수탁제조양도
- ⑩ 소프트웨어 이전에 따른 재고 양도

### (3) 양도정보 입력

- ① 양도하려는 물품정보(제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 등)를 확인하여 입력한다.

\* 제품명 검색 결과값에 여러 개가 나오면 제품의 표준코드 및 최소유통단위를 확인하여 선택한다.

- ② 물품 수량(최소유통단위수량·날개단위수량) 확인하여 입력한다.
- ③ 양도정보목록에 입력한 제품정보와 입력상태(정상/누락)를 확인한다.

- (4) [보고완료] 선택하여 양도보고를 완료한다.

### 4-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폐기보고 따라하기

폐기보고 신규보고
30:18
연장
임시저장
임시저장 가져오기
보고완료
닫기

4

**1 기본정보** \* 담당자휴대폰번호 SMS문자 수신 가능

보고일자	2019-12-27	담당자명	님스관리자	법적보고의무자명	NIMS대표자
취급일자	2019-12-20	담당자전화번호	02-1111-2222	담당자휴대폰번호	010-1234-1234
보고사유	해당사항없음				
비고	사고마약류(파손)를 관할 허가기관을 통해 폐기				

※ 취급일자: 폐기공문 시행일, 폐기일자: 공문에 명시된 폐기일자 (폐기일자 명시가 안되어 있을경우 시행일)

**2 공통정보**

폐기종류	보건소폐기	폐기방법	희석	관할관청	경기도 안양시 찾기 3830263
폐기장소	보건소 뒤 소각장	폐기일자	2019-12-18	폐기사유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선택]</p> <p>사고마약류(파손)</p> <p>사고마약류(변질, 부패)</p> <p>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p> <p>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유효기한 임박)</p> <p>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사용중단)</p> <p>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폐업)</p> <p>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환자반납)</p> <p>중정기타 (사고마약류(도난, 분실, 재해) 발생보고 완료건)</p> <p>기타 (제조공정 중 폐기물)</p> </div>

폐기보고 관할 행정기관: 관할 행정기관은 폐기민원 신청 및 처리를 해주는 기관으로 선택해 주세요.

**3-1 기정보 (선택라인: 1라인)** ※ 라인을 선택하고 내용을

제품명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10ml)	찾기	8806498052123	제품재고조회	
제조번호	12345	유효기한	2020-12-03	저장소	기본저장소 / S
일련번호	A121212	제품 최소유통단위	1박스	제품 날개단위	5바이알
xde / RFID		최소유통단위수량	0 박스	날개단위수량	1 바이알

**3-2 재고차감구분**  재고차감  재고차감안함 ※ 재고에 변동이 없는 경우의 폐기는 "재고차감안함" 을 선택해주세요.

※ 유통단위수량은 개봉하지않은 박스/병/통 등의 수량입니다.  
 예) 유통단위: 날개단위: 1박스 \* 5알 = 최소유통단위수량: 1, 날개단위수량: 5를 입력  
 예) 유통단위 없는 경우: 10알 = 최소유통단위수량: 0, 날개단위수량: 10를 입력  
 예) 날개단위 없는 경우: 2박스 = 최소유통단위수량: 2, 날개단위수량: 0를 입력

**폐기정보 목록** \* 목록보기 크기 설정 5행

No.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재고차감구분	최소유통단위수량	날개단위수량	입력상태
1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10ml)	8806498052123	기본저장소 / S	12345	A121212	2020-12-03	재고차감	0 박스	1 바이알	정상

**(1) 기본정보 입력**

- ① 보고일자 : 폐기보고일(자동입력), 취급일자 : 관할 허가관청에서 보낸 폐기처리 완료 공문 시행일을 입력한다.
- ② 담당자명·법적보고의무자명을 입력한다.
  - 담당자명 : 법적 보고자가 보고 업무를 위임한 담당자(실무자) 이름
  - 법적보고의무자명 : 법적 보고의무를 가진 마약류취급자(대표자) 이름

**(2) 폐기 공통정보 입력**

- ① 공문에 기재된 폐기종류, 폐기장소, 폐기방법을 선택·입력한다.

### 📄 폐기 종류 및 방법 구분값

**[폐기 종류]** ① 보건소폐기 ② 공무원입회 ③ 도난·분실·재해 발생 사고마약류

**[폐기 방법]** ① 소각 ② 중화 ③ 가수분해 ④산화 ⑤환원 ⑥희석 ⑦매몰 ⑧기타 ⑨사고

② 폐기민원을 처리한 관할 행정기관(보건소)을 선택한다.

③ 공문에 명시된 폐기일자를 확인하여 입력하고, 폐기일자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폐기공문 시행일을 입력한다.

\* 사고마약류(도난, 분실, 재해)에 대해 관할 허가기관(보건소)에서 공문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취급일자·폐기일자를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일자'로 입력

④ 해당 마약류 폐기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고한다.

### 📄 폐기 사유 구분값

사고마약류	① 파손 ② 변질, 부패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① 유효기한 임박 ② 사용중단 ③ 폐업 ④ 환자반납
기타	① 사고마약류(도난, 분실, 재해) 발생보고 완료건 ② 제조과정 중 폐기물

### (3) 폐기정보 입력

① 폐기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한다.

- 제품명/제품코드 입력 : [찾기] ⇒ 제품명 또는 제품코드를 입력하여 폐기한 마약류를 검색·입력
- 물품 수량(최소유통단위수량·날개단위수량) 확인하여 입력

② 재고차감구분값(재고차감·재고차감안함)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③ 취급자가 폐기정보목록에 입력한 제품정보(품명·제품코드·제조번호·일련번호 정보·유효기한)와 입력상태(정상/누락)를 확인한다.

(4) [보고완료] 선택하여 폐기보고를 완료한다.



### 4-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변경보고 따라하기

알림 마이페이지 연계 메뉴얼 **보고관리** 관리대장 기준정보
30:10 [연장](#)
님스 김효진(A님) [로그아웃](#)

**1-1**

투약보고 목록 🔍 보고관리 > 보고종류 > 투약보고

▣ 투약보고 보고현황 ("신규보고"를 눌러서 보고해 주세요.) 🔍 조회 📄 신규보고

**1-2**

환자명   보고일자  취급일자 2019-11-27 ~ 2019-12-27 어제 오늘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처방전발급번호  사용자보고식별번호  담당자명

보고유형  상태 정상 보고업체명 님스

보고제품  제조번호  일련번호

제조번호 없음  일련번호 없음

▣ 보고목록 (목록을 선택하고 "상세내용"을 클릭하거나 더블클릭하면 보고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보고변경 / 보고취소"는 상세내용 화면으로 들어가서 작업 할 수 있습니다.

No.	보고일자	취급일자	환자명	환자식별번호	처방의명	처방전발급번호	담당자명	보고라인수	보고유형	상태	보고방식	사용자보고식별번호
1	2019-12-27	2019-12-24	김공순	900101-1***	김의사	2019122412345	NIMS_김3	2	신규	정상	직접(웹)	H20191200000429802241
2	2019-12-19	2019-11-24	○○	11111	홍길동	11111	시스템문	1	변경	정상	직접(웹)	H20191200000426853535
3	2019-12-13	2019-12-13	김철수	101010	님스	201912131902	NIMS_양	1	신규	정상	직접(웹)	H20191200000424934215

(1) 변경하려는 취급보고 내역 조회

- ① [보고관리] > 취급보고 유형을 선택한다.
- ② 보고일자 및 취급일자, 보고유형, 보고제품 등으로 조회하여 변경하려는 취급보고 내역을 선택하여 [상세내용]을 누른다.

투약보고 상세내용
02:34 [연장](#) [출력](#) [신규보고 \(내용복사\)](#) **변경보고** [취소보고](#) [닫기](#)

**1-3**

▣ 기본정보 (님스) ※ 등록일시 : 2019-12-27 16:11:28

보고일자	2019-12-27 16:11:28	담당자명	NIMS	사용자보고식별번호	H2019:
취급일자	2019-12-24	담당자전화번호	02-1111-2222	참조사용자보고식별번호	
법적보고의무자명	NIMS대표자	담당자휴대폰번호	010-1234-1234	보고유형 / 보고방식	신규 / 직접(웹)
비고					

▣ 환자 처방 정보

환자명	김공순	처방의명	김의사	처방기관명	님스병원 / E0999
환자식별번호구분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의사	처방전발급번호	2019122412345
환자식별번호	900101-1*****	면허번호	제1호	질병분류기호	****

보고된 질병분류기호는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치리로 반영됩니다.

③ 오른쪽 상단의 [변경보고] 선택

투약보고 변경보고
29:16
연장
이전화면
보고완료
닫기

3

기본정보 ( 참조사용자식별번호 : H20191200C ) \* 담당자휴대폰번호 SMS문자 수신 가능

보고일자	2019-12-27	담당자명	님스담당자	법적보고의무자명	NIMS대표자
2-1 일자	2019-12-18	담당자전화번호	033-0000-0000	담당자휴대폰번호	010-0000-0000
변경사유	최초처방(1앰플)에서 투약수량 1.5앰플로 변경				
비고	투약수량 변경				

환자 처방 정보

환자명	김홍순	찾기	처방의명	김의사	찾기	처방기관명	님스병원	찾기	E0999
환자식별번호구분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의사		처방전발급번호	11111		
환자식별번호	900101-1*****		면허번호	12345		질병분류기호	k09	찾기	

2-2 약정보 ( 선택라인 : 1라인 ) ※ 질병분류기호가 여러 개일 경우는 "/"로 구분하여 입력  
※ 라인을 선택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제품명/제품코드	아네콜주사(프로포폴) (12mℓ)	찾기	8806578045922	제품재고조회	1회투어량	1 앰플
저장소	테스트창고 / S000	일괄적용	중점/일반 관리구분	중점관리대상	1일투어횟수	1 회
제조번호	12345	찾기	유효기한	2019-12-31	총투어일수	1 일
일련번호	A121212	찾기	제품 날개단위	5 앰플	총처방량	1 앰플
Barcode / RFID		찾기	투약수량	1 앰플	사용후폐기량	0.5 앰플

※ 제품코드 확인후, 일련번호가 훼손된 경우는 [M]버튼으로 입력하여 보고합니다.

추가
라인복사
삭제
초기화
Barcode / RFID 스캔
제품 역설퍼로드

투약정보 목록 \* 목록보기 크기 설정 5행 엑셀다운로드

No.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투약수량	1회투어량	1일투어횟수	총투어일수	총처방량	사용후폐기량	입력상태
1	아네콜주사(프로포폴) (12mℓ)	8806578045922	테스트창고	12345	A121212	2019-12-31	1 앰플	1 앰플	1	1	1 앰플	0 앰플	정상
2	아네콜주사(프로포폴) (12mℓ)	8806578045922	테스트창고	12345	A121212	2019-12-31	1 앰플	1 앰플	1	1	1 앰플	0.5 앰플	정상

**(2) 변경내역 작성**

① 변경사유에 최초보고 내역을 변경하려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다.

(예 : 최초처방 1앰플에서 투약수량이 1.5앰플로 변경)

② 변경하려는 정보를 수정하고 입력상태(정상/누락)를 확인한다.

**(3) 최초 보고한 정보를 변경 후, [보고완료] 선택한다.**

\* 변경보고기한은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원칙), 변경처방전이 발행된 경우 처방전 발급일자를 취급 일자로 선택하여 변경보고 진행

**⚠ 주의사항**

▶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취급보고 내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로 연계소프트웨어로 취급보고한 경우, 반드시 연계소프트웨어 업체 안내에 따라 연계 소프트웨어에서 보고 내역을 변경합니다.

▶ 연계소프트웨어에 **변경 기능이 없는 경우**

⇒ 직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해당 보고화면에서 '변경보고' 합니다.

※ 연계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복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



### 4-6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원미확인자 변경보고 따라하기



(1) 신원미확인자 변경보고 목록 조회

① [보고관리] → [신원미확인자변경보고목록]에서 보고내역을 검색한다.



② [보고목록]에서 변경을 원하는 보고내역을 확인하여 [변경보고]를 누른다.

신원미확인자변경보고
보고완료
닫기

3

□ 기본정보 \* 담당자휴대폰번호 SMS문자 수신 가능

보고일자	2019-12-27	담당자명	님스관리자	법적보고의무자명	님스관리자
2-1 변경사유	신생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추후	담당자전화번호	02-2172-1111	담당자휴대폰번호	010-1111-1111

2-2

□ 환자정보변경

환자명	김새싹	환자식별번호구분	주민등록번호	환자식별번호	191219-3111111
-----	-----	----------	--------	--------	----------------

□ 변경대상 보고목록 (보고완료 후 결과확인은 투약보고/조제보고 화면에서 변경보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다운로드
삭제

No.	보고구분	보고일자	취급일자	환자명	환자식별번호	처방의명	처방전발급번호	사용자보고식별번호
1	조제	2019-12-26	2019-12-20	김새싹	191219-3000001			

**(2) 신원미확인자 정보 변경**

- ① 변경사유에 최초보고 내역을 변경보고 하려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다.  
(예 : 신생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추후 확인 후 기재, 의식불명의 환자 신원확인으로 변경보고)
- ② 환자정보변경 란에 신원을 확인한 정보를 입력한다.

**(3) [보고완료]를 선택하여 변경보고를 마친다.**

\* 변경보고기한은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이나, 신원미확인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변경보고 기한 종료 이후에도 변경보고 가능

### 4-7 처방전 변경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변경보고 따라하기

알림 마이페이지 연계 매뉴얼 **보고관리** 관리대장 기준정보 30:30 **연장** 님스 김효진님 로그인

**1-1** 투약보고 목록 홈 > 보고관리 > 보고종류 > 투약보고

□ 투약보고 보고현황 ("신규보고"를 눌러서 보고해 주세요.) Q 조회  신규보고

**1-2**

환자명  ● 보고일자 ○ 취급일자 2019-11-27 ~ 2019-12-27 어제 오늘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처방전발급번호  사용자보고식별번호  담당자명

보고유형  [ 전체 ] 상태  정상 보고업세명  님스

보고제품  Q 조회 제조번호  찾기 일련번호  찾기

제조번호 없음  일련번호 없음

□ 보고목록 (목록을 선택하고 "상세내용"을 클릭하거나 더블클릭하면 보고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보고변경 / 보고취소"는 상세내용 화면으로 들어가서 작업 할 수 있습니다. 100행 상세내용 엑셀다운로드

No.	보고일자	취급일자	환자명	환자식별번호	처방의명	처방전발급번호	담당자명	보고라인수	보고유형	상태	보고방식	사용자보고식별번호
1	2019-12-27	2019-12-24	김종순	900101-1***	김의사	2019122412345	NIMS_김효	2	신규	정상	직접(웹)	H20191200000429802241
2	2019-12-19	2019-11-24	○○	11111	홍길동	11111	시스템문	1	변경	정상	직접(웹)	H20191200000426853535
3	2019-12-13	2019-12-13	김철수	101010	님스	201912131902	NIMS_양현	1	신규	정상	직접(웹)	H20191200000424934215

(1) 변경하려는 취급보고 내역 조회

- ① [보고관리] > 취급보고 유형을 선택한다.
- ② 보고일자 및 취급일자, 보고유형, 보고제품 등으로 조회하고 변경하려는 취급보고 내역을 선택하여 [상세내용] 선택한다.

투약보고 상세내용 02:34 **연장** **출력** **신규보고 (내용복사)** **변경보고** **취소보고** **닫기**

**1-3**

□ 기본정보 (님스) \* 등록일시 : 2019-12-27 16:11:28

보고일자	2019-12-27 16:11:28	담당자명	NIMS	사용자보고식별번호	H2019:
취급일자	2019-12-24	담당자전화번호	02-1111-2222	참조사용자보고식별번호	
법적보고의무자명	NIMS대표자	담당자휴대폰번호	010-1234-1234	보고유형 / 보고방식	신규 / 직접(웹)
비고					

□ 환자 처방 정보

환자명	김종순	처방의명	김의사	처방기관명	님스병원 / E0999
환자식별번호구분	주민등록번호	면허증별	의사	처방전발급번호	2019122412345
환자식별번호	900101-1*****	면허번호	제1호	질병분류기호	****

보고된 질병분류기호는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처리로 변경됩니다.

□ 투약정보 목록 (라인을 선택하면 하단에 상세내용이 표시됩니다) \* 목록보기 크기 설정 5행 엑셀다운로드

No.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투약수량	1회투여량	1일투여횟수	총투여일수	총처방량	사용후폐기량
1	부광미다졸람주사 (3r	8806422006925	테스트창고	12335	11111	2021-04-01	1 앰플	1 앰플	1 회	1 일	1 앰플	0 앰플
2	부광미다졸람주사 (3r	8806422006925	테스트창고	12335	11111	2021-04-01	2 앰플	1 앰플	1 회	2 일	2 앰플	0 앰플

③ 오른쪽 상단의 [변경보고] 선택한다.

투약보고 변경보고
29:28
연장
이전화면
보고완료
닫기

3

기본정보 ( 참조사용자식별번호 : H201912000 ) \* 담당자휴대폰번호 SMS문자 수신 가능

보고일자	2019-12-29	담당자명	NIMS담당자	법적보고의무자명	NIMS대표자
취급일자	2019-12-27	담당자전화번호	02-1111-2222	담당자휴대폰번호	010-1234-1234
변경사유	총 투약량 변경으로 변경처방전 발행에 따라 변경보고				

**2-1**

---

환자 처방 정보

환자명	김중순	처방의명	김의사	처방기관명	nim스병원
환자식별번호구분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의사	처방전발급번호	2019122412345
환자식별번호	900101-1234567	면허번호	제1호	질병분류기호	k09

**2-2**

투약정보 ( 선택라인 : 2라인 ) \* 라인을 선택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제품명/제품코드	부광미다졸람주사 (3ml)	제품재고조회	1회투여량	1 앰플
저장소	테스트참고 / S000	중점/일반 관리구분	1일투여횟수	1 회
제조번호	12335	유효기한	총투여일수	1 일
일련번호	11111	제품 날개단위	총처방량	1 앰플
Barcode / RFID		투약수량	사용후폐기량	0.5 앰플

\* 제품코드 확인후 일련번호가 훼손된 경우는 [M]버튼으로 입력하여 보고합니다.

추가
라인복사
삭제
초기화
Barcode / RFID 스캔
제품 역선택로드

투약정보 목록 \* 목록보기 크기 설정 5행

No.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투약수량	1회투여량	1일투여횟	총투여일수	총처방량	사용후폐기	입력상태
1	부광미다졸람주사 (3ml)	880642200692	테스트참고	12335	11111	2021-04-01	2 앰플	2 앰플	1	1	2 앰플	0 앰플	정상
2	부광미다졸람주사 (3ml)	880642200692	테스트참고	12335	11111	2021-04-01	1 앰플	1 앰플	1	1	1 앰플	0.5 앰플	정상

**(2) 변경내역 작성**

① 취급일자를 ‘변경처방전 발행일’로 입력, 변경사유에 최초보고 내역을 변경하려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다.

(예 : 총 투약량 변경으로 변경처방전 발행에 따라 변경보고)

② 변경하려는 정보로 수정하고 입력상태(정상/누락)를 확인한다.

**(3) 최초 보고한 정보를 변경 후, [보고완료] 선택한다.**

\* 변경보고기한은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이나, 처방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처방전 발급일자를 취급 일자로 선택하여 변경보고 진행

### 4-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소보고 따라하기

**(1) 취소하려는 취급보고 내역 조회**

- ① [보고관리] → 취급보고 메뉴에서 해당하는 보고 유형을 선택한다.
- ② 변경하려는 취급보고 내역을 선택하여 [상세내용] 선택한다.
- ③ 오른쪽 상단의 [취소보고] 선택한다.

조제보고 취소보고
29:56
연장
이전화면
3
보고완료
닫기

기본정보( 참조사용자식별번호 : H20191 )

2-1 일자	2019-12-19 13:01:12	법적보고의무자명	NIMS대표자	담당자전화번호	02-2172-
취급일자	2019-12-13	담당자명	NIMS	담당자후대폰번호	010-
*취소사유	투약 전 미리 조제보고하였으나 취소처방전 발행되어 최초 조제보고 내역을 취소보고				
비고					

※ 조제보고에 대한 전량반납의 사유로 인한 취소보고는 취급일자를 반납일자로 수정하여 보고합니다.

\* 환자 처방 정보

환자명	김종순	처방의명	김의사, 이의사	처방기관명	님스병원 / E0999
환자식별번호구분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의사	처방전발급번호	201912131903
환자식별번호	900101*****	면허번호	12345, 23411	질병분류기호	****

조제정보 목록 (라인을 선택하면 하단에 상세내용이 표시됩니다) 김새싹 \* 목록보기 크기 설정 5행 엑셀다운로드

No.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조제수량	1회투여량	1일투여횟수	총투여일수	총처방량	사용후폐기량
1	아네폴주사(프로포폴)	8806578045922	테스트창고			2019-12-31	1 앰플	1 앰플	1 회	1 일	1 앰플	0 앰플

**(2) 취소 사유 작성 및 취소보고**

- ① 취급일자를 '취소처방전 발행일'로 입력, 취소사유에 최초 보고 내역을 취소하려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다.  
(예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투약 전 미리 조제보고하였으나 취소처방전이 발행되어 최초 조제보고 내역을 취소보고)

**(3) [보고완료] 선택하여 최초 보고 내역을 취소한다.**



### 4-9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저장소 이동처리 따라하기

#### 참고사항

최초에는 '기본저장소' 한 개가 있으며, 비상마약류 사용 등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저장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저장소 추가하기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한다.

(2) '마이페이지'에서 '저장소관리'를 선택한다.



(3) '신규등록'을 선택한다

저장소정보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 저장소관리

**4**

저장소정보

* 저장소번호	새번호 채번 <input type="button" value="▼"/>	※ 새번호 채번: 신규로 번호를 생성합니다.
* 저장소명	응급실	
* 저장소유형	비상마약류저장시설 <input type="button" value="▼"/>	
* 저장소위치	본사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저장소와 동일
* 주소	14051 주소검색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30 (관양동)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사용여부	사용 <input type="button" value="▼"/>	
저장소정보 외부(공급처)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체크된 저장소만 외부 공급처에서 보여집니다. (단, 사용여부가 사용인 저장소)	
* 저장소관리자명	김여행	
전화번호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보고이력이 없는 저장소를 삭제할 경우, 신규등록 화면에서 다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4) '저장소 정보'에 추가하고자 하는 저장소 정보를 입력한다.

(5) '등록'을 선택하여 새로운 저장소 등록을 완료한다.

● 저장소 이동처리

저장소이동처리 신규처리
29:45
연장
임시저장
임시저장 가져오기
처리완료
닫기

3

□ 기본정보 \* 담당자휴대폰번호 SMS문자 수신 가능

처리일자	2019-12-27	담당자명	님스관리자	처리자명	NIMS대표자
취급일자	2019-12-27	담당자전화번호	02-1111-2222	담당자휴대폰번호	010-1111-2222
처리사유	해당사항없음				

□ 저장소이동 공통정보 2-1

입고 저장소 본원마약참고 / S0002 / 본사

□ 저장소이동정보 (선택라인: 1라인) 2-2 ※ 라인을 선택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제품명	하나염산페치단주사 (1ml)	찾기 8806578027546	제품재고조회 ?	중점/일반 관리구분	중점관리대상
제조번호 ?	9003	유효기한	2022-05-06	저장소 ?	기본저장소 / S0001
일련번호 ?	0000100158	제품 최소유통단위 ?	1박스	제품 날개단위 ?	25앰플
Barcode / RFID	010880657802754617220506109	최소유통단위수량 ?	0 박스	날개단위수량 ?	10 앰플

※ 유통단위수량은 개봉하지않은 박스/병/통 등의 수량입니다.  
 예) 유통단위\*날개단위: 1박스\*5앰플 = 최소유통단위수량: 1, 날개단위수량: 5를 입력  
 예) 유통단위 없는 경우: 10앰플 = 최소유통단위수량: 0, 날개단위수량: 10을 입력  
 예) 날개단위 없는 경우: 2박스 = 최소유통단위수량: 2, 날개단위수량: 0을 입력

추가
라인복사
삭제
초기화
제품 역설퍼로드

□ 저장소이동정보 목록 \* 목록보기 크기 설정 5행 엑셀다운로드

No.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이동구분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최소유통단위수량	날개단위수량	입력상태
1	하나염산페치단주사 (1ml)	8806578	기본저장소 / S0001 / 본	출고	9003	000010	2022-05-06	0 박스	10 앰플	정상
2	하나염산페치단주사 (1ml)	8806578	본원마약참고 / S0002 /	입고	9003	000010	2022-05-06	0 박스	10 앰플	정상

(1) [보고관리] → [저장소이동처리]에서 오른쪽 상단 [신규처리] 선택한다.

(2) 저장소이동정보 입력

① '입고 저장소'에서 마약류를 이동시킬 저장소를 선택한다.

② 저장소를 이동하려는 마약류 실물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한다.

(3) 저장소이동정보 목록에서 내역 확인 후 [처리완료] 선택한다.



## 4-1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동일업체 전입전출 처리 따라하기

### ● 종전 계정에서 마약류 재고 출고(기타출고)

기타출고처리 신규처리
30:08
연장
입시저장
입시저장 가져오기
처리완료
닫기

\* 담당자휴대폰번호 SMS문자 수신 가능

처리일자	2019-12-27	담당자명	NIMS대표자	처리자명	NIMS대표자
2-1  일자	2019-12-19	담당자전화번호	02-	담당자휴대폰번호	010-9
사유	개인사업자 변경없이 주소지만 이전하여 동일업체 재개설, 관할 허가기관 승인 후 기타출고처리			처리사유	해당사항없음
비고	관할 허가기관 승인 후 기타출고처리 진행				

2-2 기타출고 공통정보

출고구분	동일업체전입전출	상대업체	NIMS병원	상대업체 저장소	기본저장소 / S0001 / 본사
------	----------	------	--------	----------	--------------------

2-3 타출고정보 (선택라인: 1라인)

제품명	미다컴주15밀리그램(미다졸람) (15mg)	찾기	8806498017221	제품재고조회	중점/일반 관리구분	일반관리대상
제조번호	12345	유효기한	2021-12-16	저장소	기본저장소 / S0001	알괄착용
일련번호	A111112	제품 최소유통단위	1박스	제품 날개단위	5앰플	
Barcode / RFID		최소유통단위수량	1 박스	날개단위수량	0 앰플	

※ 유통단위수량은 개봉하지않은 박스/병/통 등의 수량입니다.  
 예) 유통단위/날개단위: 1박스+5앰플 = 최소유통단위수량: 1, 날개단위수량: 5를 입력  
 예) 유통단위 없는 경우: 10앰플 = 최소유통단위수량: 0, 날개단위수량: 10을 입력  
 예) 날개단위 없는 경우: 2박스 = 최소유통단위수량: 2, 날개단위수량: 0을 입력

추가 | 라인복사 | 삭제 | 초기화 | Barcode / RFID 스캔 | 제품 역선택로드

기타출고정보 목록

No.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최소유통단위수량	날개단위수량	입력상태
1	미다컴주15밀리그램(미다졸람) (15mg)	8806498017221	기본저장소 / S	12345	A111112	2021-12-16	1 박스	0 앰플	정상
2	데파스겔0.5mg (0.5mg)	8806433003128	기본저장소 / S	121212	B11111	2020-12-31	1 병	0 겔	정상

(1) [보고관리] → [기타출고처리] → [신규처리]를 선택한다.

(2) 기타출고처리 신규처리

① 기타출고처리 사유입력란에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다.

\* 예 :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으로 개설허가(신고)번호 변경

② 출고구분값은 '동일업체전입전출'을 선택하고 '상대업체'에서 소재지 이전으로 새로 회원가입한 계정을 선택한다.

③ 실물을 확인하여 기타출고정보를 입력한다.

(3) 기타출고정보 목록에서 내역 확인 후, [처리완료] 선택한다.

● 신규 계정에서 마약류 재고 입고(기타입고)

기타입고처리 신규처리
24:22
연장
임시저장
임시저장 가져오기
처리완료
닫기

3

□ 기본정보 \* 담당자휴대폰번호 SMS문자 수신 가능

처리일자	2019-12-27	담당자명	NIMS병원대표자	처리자명	NIMS병원대표자
2-1 일자	2019-12-27	담당자전화번호	02-34	담당자휴대폰번호	010-
사유	개인사업자 변경없이 주소지만 이전하여 동일업종 재개설, 관할 허가기관 승인 후 기타출고처리			처리사유	해당사항없음
비고	관할 허가기관 승인 후 기타출고 - 기타입고 진행				

2-2 기타입고 공통정보

입고구분	동일업체전입전출	상대업체	NIMS	상대업체 저장소	
------	----------	------	------	----------	--

2-3 입고정보 (선택라인: 2라인) ※ 라인을 선택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제품명	데파스정0.5mg (0.5mg)	찾기	8806433003111	제품재고조회	중점/일반 관리구분	일반관리대상
제조번호	121212	유효기한	2020-12-31	저장소	기본저장소 / S0001	일괄적용
일련번호	B11111	제품 최소유통단위	1병	제품 날개단위	30정	
Barcode / RFID		최소유통단위수량	1 병	날개단위수량	0 정	

※ 유통단위수량은 개봉하지않은 박스/병/통 등의 수량입니다.  
 예) 유통단위/날개단위: 1박스 \* 5정 = 최소유통단위수량: 1, 날개단위수량: 5를 입력  
 예) 유통단위 없는 경우: 10정 = 최소유통단위수량: 0, 날개단위수량: 10을 입력  
 예) 날개단위 없는 경우: 2박스 = 최소유통단위수량: 2, 날개단위수량: 0를 입력

추가 라인복사 삭제 초기화 Barcode / RFID 스캔 제품 역설업로드

□ 기타입고정보 목록 \* 목록보기 크기 설정 5행 엑셀다운로드

No.	제품명	제품코드	저장소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최소유통단위수량	날개 단위수량	입력상태
1	미다렘주15밀리그램(미다졸람) (15	8806438017221	기본저장소 / S(	12345	A111112	2021-12-16	1 박스	0 애플	정상
2	데파스정0.5mg (0.5mg)	8806433003111	기본저장소 / S(	121212	B11111	2020-12-31	1 병	0 정	정상

(1) [보고관리] → [기타입고처리] → [신규처리]를 선택한다.

(2) 기타입고처리 신규처리

① 기타입고처리 사유입력란에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다.

\* 예 :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으로 개설허가(신고)번호 변경

② 입고구분값은 '동일업체전입전출'을 선택하고 '상대업체'에서 기존 의료기관의 계정을 선택한다.

③ 실물을 확인하여 기타입고정보를 입력한다.

(3) 기타입고정보 목록에서 내역 확인 후, [처리완료] 선택한다.

## 4-1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결과조회 따라하기

알림 마이페이지 연계 매뉴얼 보고관리 회원승인 관리대장 29:50 연장 로그아웃

연계보고결과조회 [☞ 보고관리 > 보고종류 > 연계보고결과조회](#)

□ 연계보고결과조회 Q 조회

**2-1**

보고업체명: NIMS병원    보고구분: [전체]    보고방식: [전체]

보고결과: [전체]    사용자보고식별번호:    연계파일명:

연계일자: 2019-12-23 ~ 2019-12-29    어제    오늘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 연계보고목록 (목록을 선택하고 "상세내용"을 클릭하거나 더블클릭하면 보고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00행    [파일다운로드](#)    [상세정보조회](#)    [연계이력조회](#)

**2-2** [엑셀다운로드](#)

No.	연계일시	연계파일명	사용자보고식별번호	보고라	보고결과	보고방식	보고구분	보고유형	SW명
1	2019-12-28 09:47:02	191228094633...	122809463		성공	연계(API)	조제	신규	Pharm
2	2019-12-27 16:33:00	191227163231...	122716323		성공	연계(API)	구입	신규	Pharm
3	2019-12-27 16:18:50	191227161820...	122716182		성공	연계(API)	조제	신규	Pharm
4	2019-12-27 15:37:06	191227153637...	122715363		성공	연계(API)	조제	신규	Pharm
5	2019-12-27 14:55:45	191227145515...	122714551		성공	연계(API)	조제	신규	Pharm
6	2019-12-27 13:31:31	191227133101...	122713310		성공	연계(API)	조제	신규	Pharm
7	2019-12-27 13:30:39	191227133009...	122713300		성공	연계(API)	조제	신규	Pharm
8	2019-12-27 12:49:31	191227124902...	122712490		성공	연계(API)	구입	신규	Pharm
9	2019-12-27 12:24:40	191227122410...	122712241		성공	연계(API)	조제	신규	Pharm
10	2019-12-27 11:54:58	191227115429...	122711542		성공	연계(API)	조제	신규	Pharm

(1) [보고관리] → [연계보고 결과조회]를 선택한다.

(2) 결과조회 및 성공 여부 확인

① 구분값\*을 입력하여 조회한다.

\* 보고결과, 연계일자, 사용자보고식별번호, 보고방식 등

② [연계보고목록]에서 보고결과의 '성공' 여부를 확인한다.

### 4-1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오류탐지결과 조회 따라하기

(1) [보고관리] → [보고오류탐지결과]를 선택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보고오류탐지결과' (Report Error Detection Results) page. It includes search filters for reporting status, date range, and user. Below the filters are three main sections: 2-1 (Search filters), 2-2 (Summary table), and 2-3 (Detailed error list).

**2-2 오류 종류별 탐지결과**

No.	오류보고수	총오류수	오류종류명
1	180	180	처방의사명에 사람성명이 아닌 숫자 또는 기호가 입력된 경우
2	13	13	[조제보고, 투약보고(동물병원제외)]환자식별번호가 오류인 경우
3	2	3	[조제보고, 투약보고] 처방의명에 숫자 및 기호가 포함된 경우
4	1	1	[조제보고, 투약보고] 처방기관번호(요양기관코드)에 알파벳이 포함된 경우
5	2	5	[조제보고, 투약보고] 면허종별이 약사, 기타, 한약사인 경우

**2-3 보고오류 목록 (처방의사명에 사람성명이 아닌 숫자 또는 기호가 입력된 경우)**

No.	보고구분	보고일자	취급일자	환자명	처방전발급번호	사용자보고식별번호	오류수	상대업체명	참조사용자보고식별번호	보고방식
1	조제	2019-12-26	2019-12-24	문환자(7601012)	20191101-12345		1			연계(API)
2	조제	2019-12-26	2019-12-24	변			1			연계(API)
3	조제	2019-12-26	2019-12-24	문			1			연계(API)
4	조제	2019-12-26	2019-12-23	진			1			연계(API)
5	조제	2019-12-26	2019-12-23	원			1			연계(API)

**오류내용**

No.	오류내용	조치방법	제품명	제품코드	보고구분	보고일자	사용자식별번호
1	처방의사명에 사람성명이 아닌 숫자 또는 기호가 입력된 경우	조제보고, 투약보고-처방을 한 의사명을 정확히 입력			조제	2019-12-26	PMMSM191226-0793

(2) 보고오류탐지결과 조회

- ① 보고오류현황에서 구분값을 입력하여 조회한다.
  - ② [오류 종류별 탐지결과]에서 오류보고수, 총 오류수, 오류종류명을 확인한다.
  - ③ [보고오류목록]에서 오류보고 내역이 나오고 세부 오류 내역은 하단의 [오류내용]에서 확인한다.
- (3) 오류를 변경하거나 보고를 취소하려는 경우 [변경보고바로가기]·[취소보고바로가기]를 선택한다.

## II 연계소프트웨어(의사랑) 사용 매뉴얼 목차

1. 연계소프트웨어 접속하기
2. 연계소프트웨어 보고내역 확인하기
3. 연계소프트웨어 재고내역 확인하기
4. 연계소프트웨어 취급보고 따라하기
  - ▶ 구입보고
  - ▶ 투약보고
  - ▶ 투약 변경보고
  - ▶ 투약 취소보고

# 1 연계소프트웨어(의사랑) 접속하기



1-3

## (1) 연계소프트웨어(‘의사랑’) 접속

- ① 컴퓨터에 있는 ‘의사랑’ 아이콘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 ② 의사의 이름(아이디)과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접속합니다.



## 2 연계소프트웨어(의사랑) 보고내역 확인하기

### ● 구입보고 내역 확인

진료실 [툴버전: 5.2.6.9 - 최신버전] [사용자정보: 의사(doctor)] [파일버전: 5.2.7.2 - 최신버전]

환자 편집 코드조회 보기 환자조회 도구 서비스 ☎02-2105-5000 **공지** 의사랑 정보를

화면정리 새로그침 전제환자 외래완료 **청 1-1** 마약류시스템 투약보고 관리

동의서 서명요청  
 동의서 서명내역 조회  
 도구모음 설정  
 환경설정  
 모바일 대기현황판 서비스 ▶

구입보고 투약보고 환경설정 종료 원력요청 NIMS

과거 마약류 구입 목록 조회 (판매처 취급일자 기준) [www.nims.or.kr](http://www.nims.or.kr) (의약품안전관리원 제도관련 문의: ☎ 1670-)

2019-12-20 ~ 2019-12-27 오늘 3일 일주일 조회 **1-2**

보고완료 조회 결과

신규보고(0) | 변경보고(0) | 판매처취소(0) **보고완료(2)**

선택	보고일자	취급일자	상대업체식별...	상대업체명	담당자명	보고유형	사용자보고식...	참조사용자보...	판매사용자보...
▶	2019-12-27	2019-12-27		TST테스트도매	의사	신규	PCM2019122...		H20191200000...
▶	2019-12-27	2019-12-27		TST테스트도매	의사	신규	PCM2019122...		H20191200000...

**1-3**

#### (1) 진료실에서 구입보고 내역 확인

- ① [도구] - [마약류시스템 투약보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 ② [구입보고]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지정하여 [조회]를 선택합니다.

\* 조회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 ③ [보고완료]를 선택하여 보고완료된 구입보고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 투약보고 내역 확인

진료실 [툴버전: 5.2.6.9 - 최신버전] [사용자정보: 의사(doctor)] [파일버전: 5.2.7.2 - 최신버전]

환자 편집 코드조회 보기 환자조회 도구 서비스 ☎02-2105-5000 **공지** 의사랑 정보를

화면정리 새로그침 전체환자 외래완료 **청 1-1** 마약류시스템 투약보고 관리

- 동의서 서명요청
- 동의서 서명내역 조회
- 도구모음 설정
- 환경설정
- 모바일 대기현황판 서비스

---

구입보고 **투약보고** 환경설정 종료 원격요청 NIMS

www.nims.or.kr (의약품안전관리원 제도관련 문의: ☎ 1670-6721)

2019-12-30 ~ 2020-01-06 오늘 3일 일주일 전체 전체 조회 **1-2**

보고완료 조회 결과

신규보고(0) | 취소보고(0) | 변경보고(1) | **보고완료(11)**

유형	내원일	차트번호	수진자명	사용자 코드	약품명	일투수	용량	일수	사용량 (①)	사용후 폐기량 (②)	총소모량 (①+②)	담당 의	보고식별번호	보고유형
▶ 외래	2019-12-30	20190321	김환자	pd	펜디정	3	1	1	1	0	1	의사	MCM20191...	신규
▶ 외래	2019-12-30	20190321	김환자	znp...	자나팜정0.25mg	3	1	1	1	0	1	의사	MCM20191...	신규

**1-3**

(1) 진료실에서 투약보고 내역 확인

- ① [도구] - [마약류시스템 투약보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 ② [투약보고]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 등 상세내역을 지정하여 [조회]를 선택합니다.
- ③ [보고완료]를 선택하여 보고완료된 투약보고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 3 연계소프트웨어(의사랑) 재고내역 확인하기

진료실 [툴버전: 5.2.6.9 - 최신버전] [사용자정보: 의사(doctor)] [파일버전: 5.2.7.2 - 최신버전]

환자 편집 코드조회 보기 환자조회 도구 서비스 ☎02-2105-5000 **공지** 의사랑 정보를

화면정리 새로그침 전체환자 외래완료 **청 1-1** 마약류시스템 투약보고 관리

동의서 서명요청  
 동의서 서명내역 조회  
 도구모음 설정  
 환경설정  
 모바일 대기현황판 서비스

구입보고 투약보고 환경설정 종료 원격요청 NIM

www.nims.or.kr (의약품안전관리원 제도관련 문의: ☎ 1670-6)

[2019-12-23] ~ [2019-12-30] 오늘 3일 일주일 전체 [조회]

신규보고 조회 결과 **1-2**

신규보고(3) 취소보고(0) 변경보고(0) 보고완료(5)

선택	유형	내원일	차트번호	수진자명	사용자코드	약품명	일투수	용량	일수	사용량 (①)	사용종료 기량 (②)	총소모량 (①+②)	담당의
▶	외래	2019-12-27	20190322	신환자	znp1	자나팜정 1mg	3	1	1	1	0	1	의사

자나팜정1밀리그램(알프리졸람) (1mg) - 총재고량: 1389 정 **1-3**

사용약품 선택

선택	제품코드	제품명	재고량	폐기량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간
<input type="checkbox"/>	880	자나팜정 1mg...	299	0			2021-08-05
<input type="checkbox"/>	880	자나팜정 1mg...	31	0			2024-07-17
<input type="checkbox"/>	880	자나팜정 1mg...	30	0			2024-09-25

일련번호: [ ] 찾기 확인(O) 닫기(C) **1-4**

#### (1) 투약보고의 신규보고 리스트에서 약품별 재고 확인

- ① [도구] - [마약류시스템 투약보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 ② [투약보고]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지정하여 [조회]를 선택합니다.
- ③ [신규보고]를 선택하고 해당 약품을 더블선택합니다.
- ④ 해당하는 약품의 재고를 확인합니다.

※ 의사랑에서는 마이너스 재고가 제외되어 보이므로, 정확한 재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www.nims.or.kr)의 [관리대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1 연계소프트웨어(의사랑) 구입보고 따라하기

### ● 신규 구입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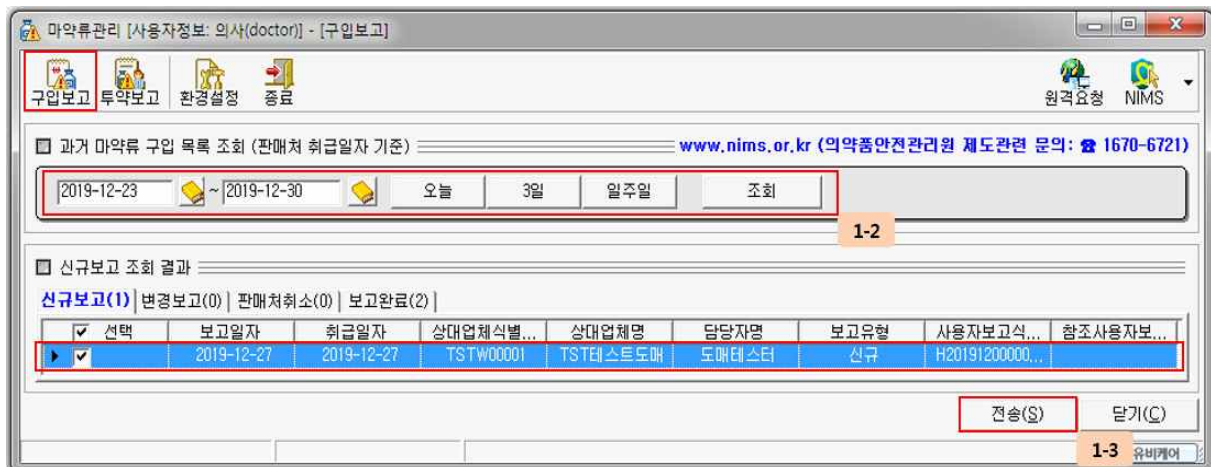
#### ⚠ 주의사항

- ▶ '의사랑'은 도매상에서 판매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만 구입보고를 지원합니다. 구입보고의 신규 보고에서 해당 보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도매상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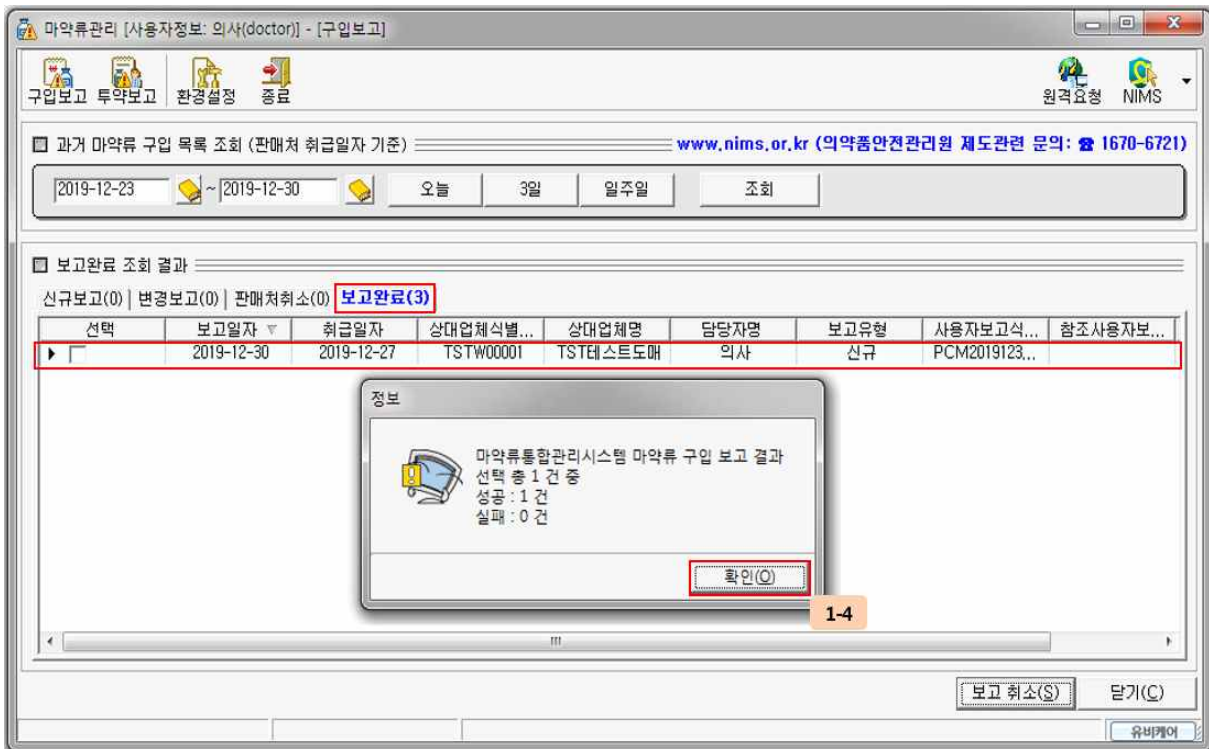
### (1) 도매상에서 판매보고 한 리스트에서 구입보고

- ① [도구] - [마약류시스템 투약보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 ② [구입보고]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지정하여 [조회]를 선택합니다.

- ③ [신규보고]를 선택하고, 해당 보고를 지정하여 [전송]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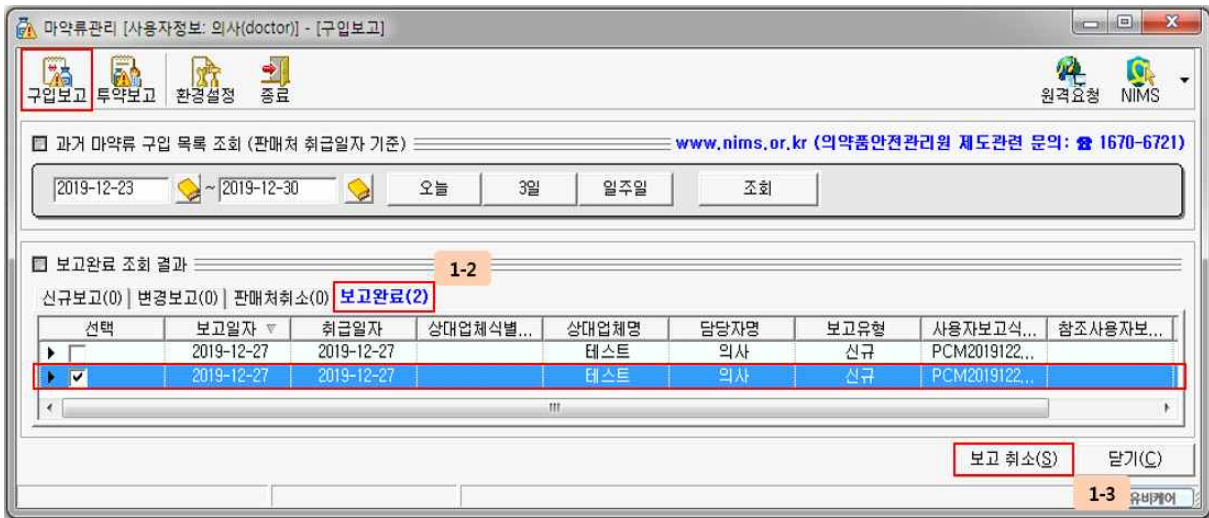
④ 구입보고 신규보고를 확인합니다.

### ● 구입보고 취소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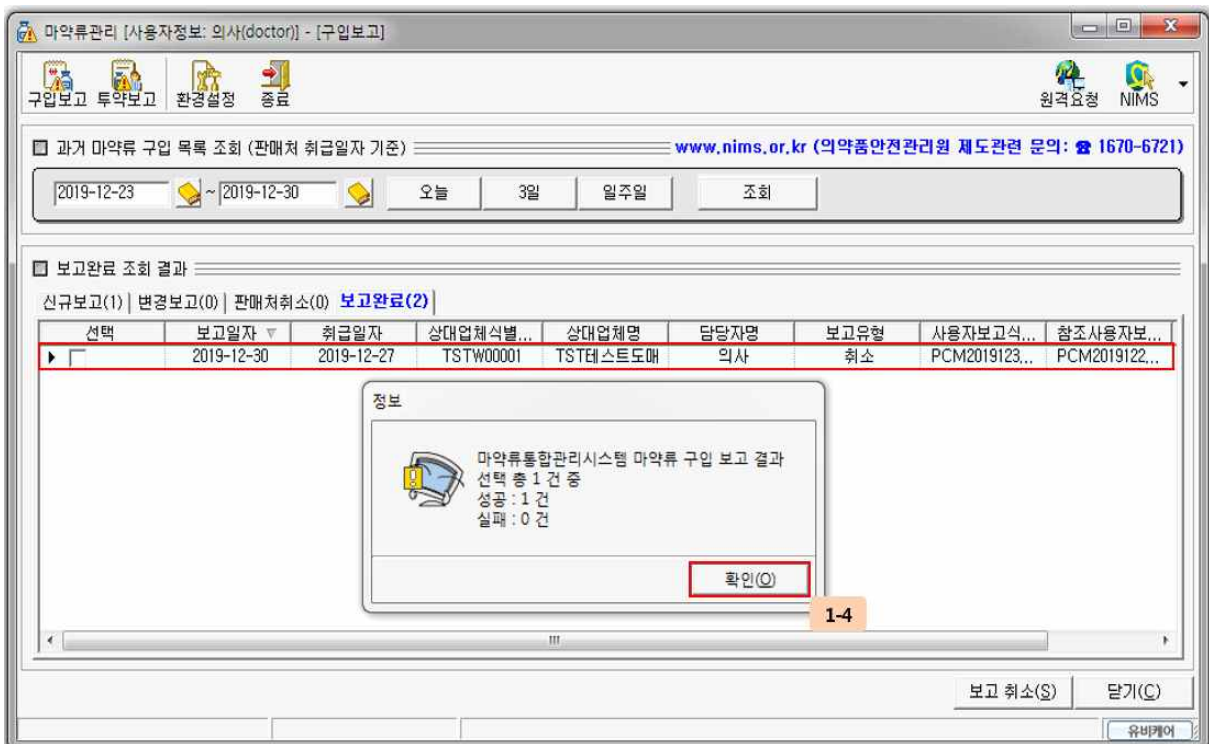
(1) 구입보고 완료된 리스트에서 취소보고

① [도구] - [마약류시스템 투약보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② [구입보고] - [보고완료]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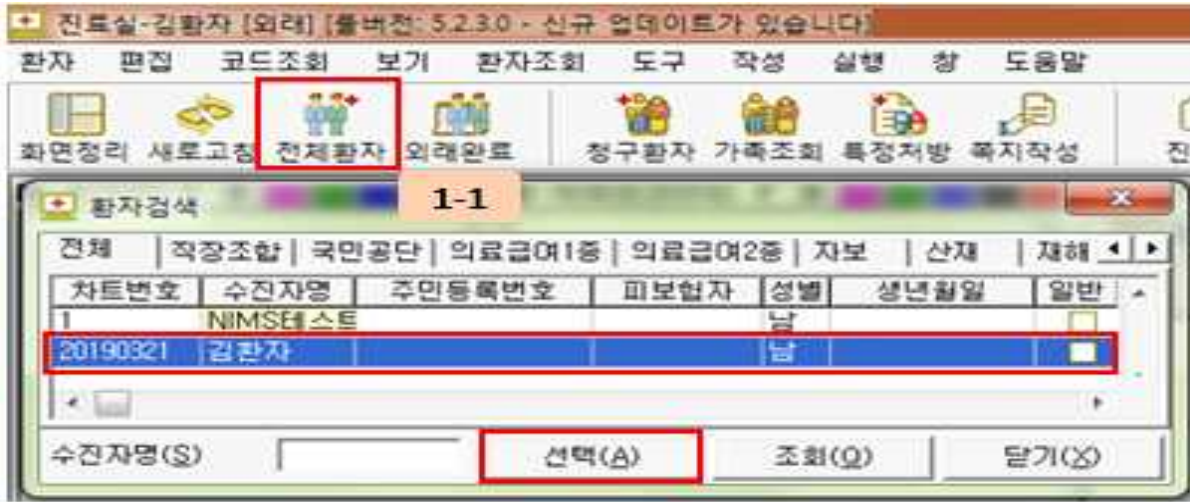
③ 취소할 해당 보고를 지정하여 [보고 취소]를 선택합니다.



④ 구입보고 취소보고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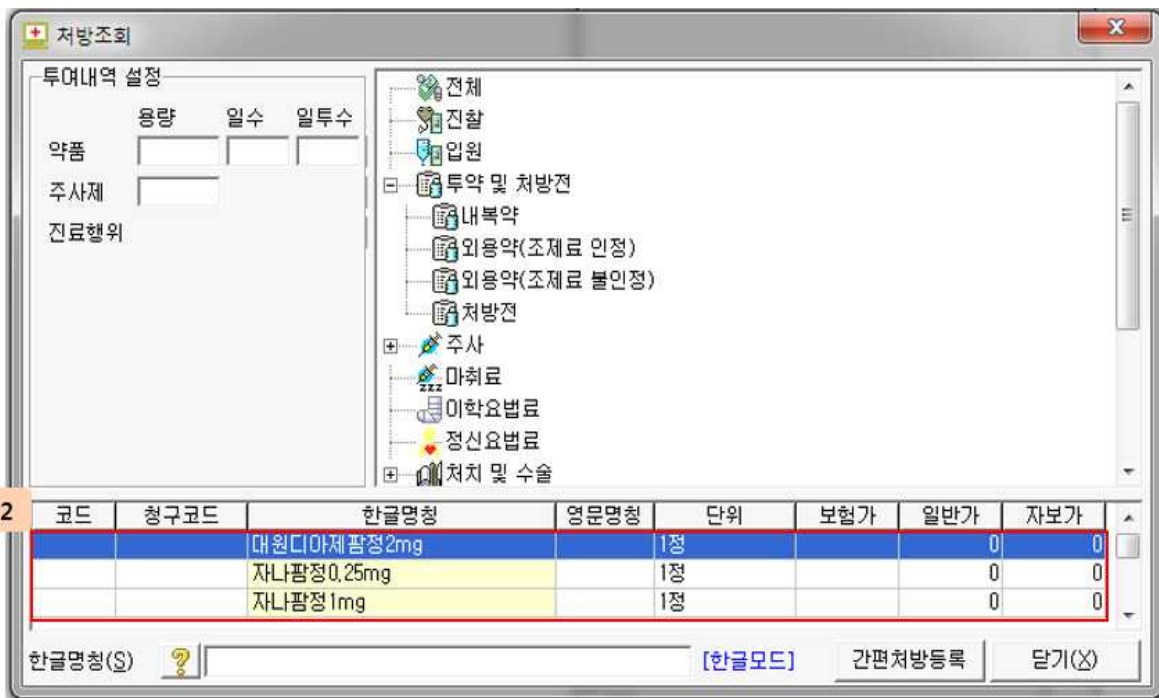


### 4-2 연계소프트웨어(의사랑) 투약보고 따라하기



#### (1) 진료실에서 환자 선택

① [전체환자]를 선택하여 투약보고 할 환자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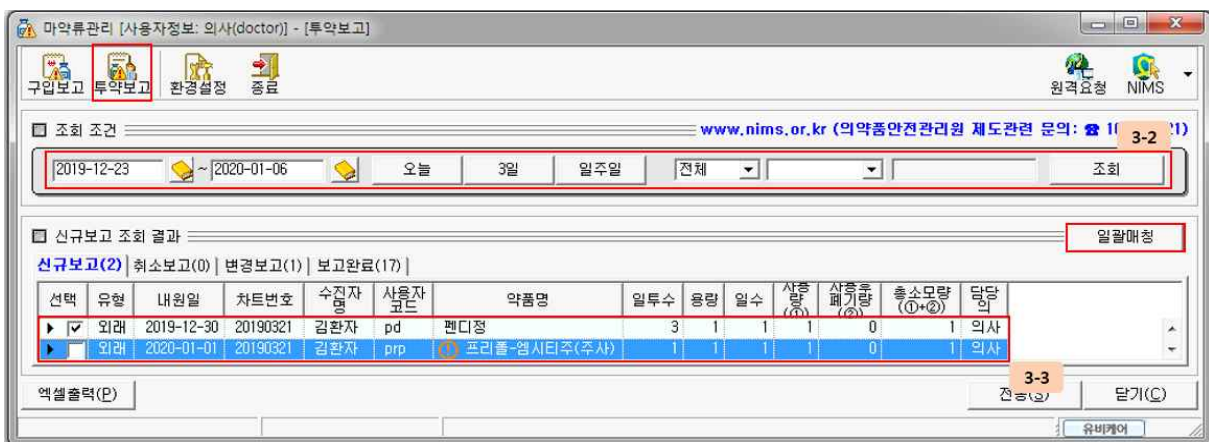
**(2) 조제/투약 약품정보 입력**

- ① [처방]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② 등록된 약품창에서 처방하고자 하는 약품을 선택합니다.
- ③ 처방된 약품의 용량, 일수 등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 ④ [저장]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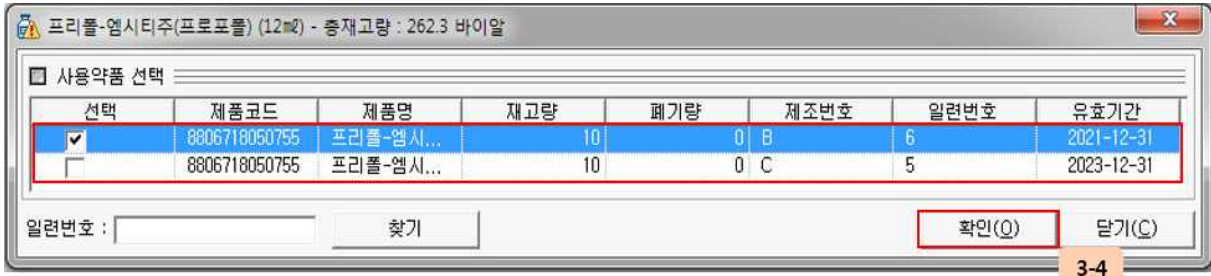
**(3) 처방내역 신규보고 전송**

- ① [도구] - [마약류시스템 투약보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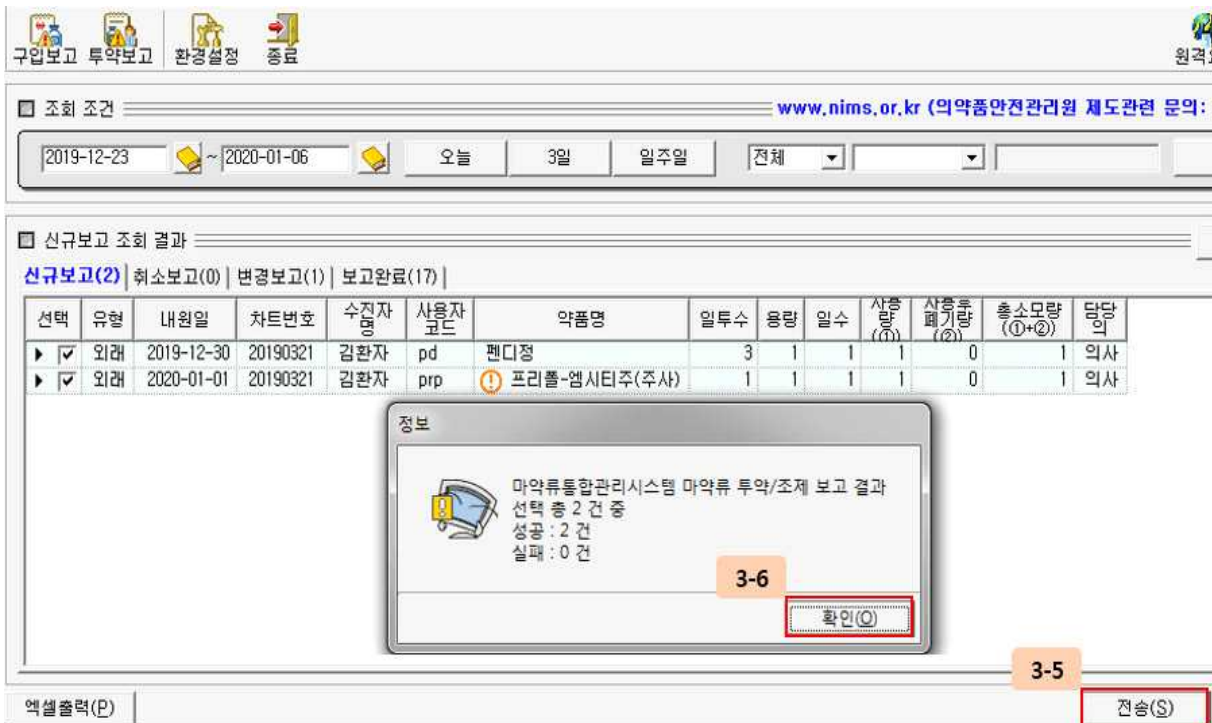
- ② [투약보고]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지정하여 [조회]를 선택합니다.
- ③ [신규보고]에서 [일괄매칭]을 선택합니다.

\* 일괄매칭의 경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만 선택되며 재고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선택됩니다.



3-4

④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해당보고를 더블선택하여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간 등 상세내역을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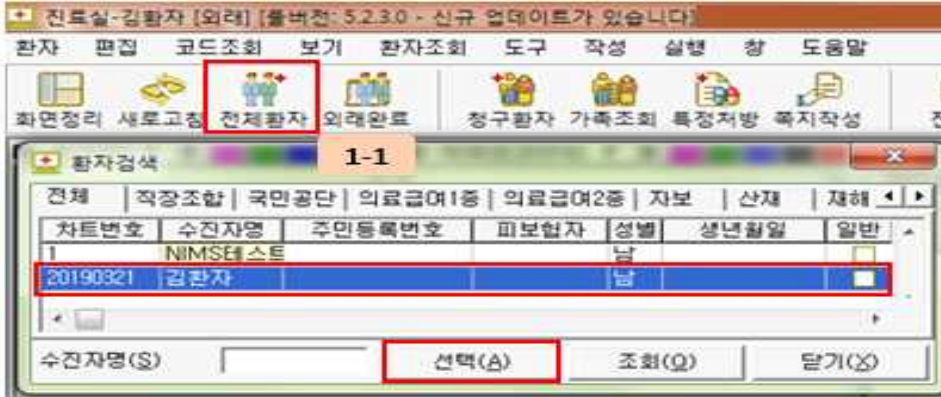
3-6

3-5

⑤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을 선택합니다.

⑥ 투약보고 신규보고를 확인합니다.

### 4-3 연계소프트웨어(의사랑) 투약 변경보고 따라하기



(1) 진료실에서 환자 선택

- ① [전체환자]를 선택하여 투약보고 변경할 환자를 선택합니다.



(2) 조제/투약 약품정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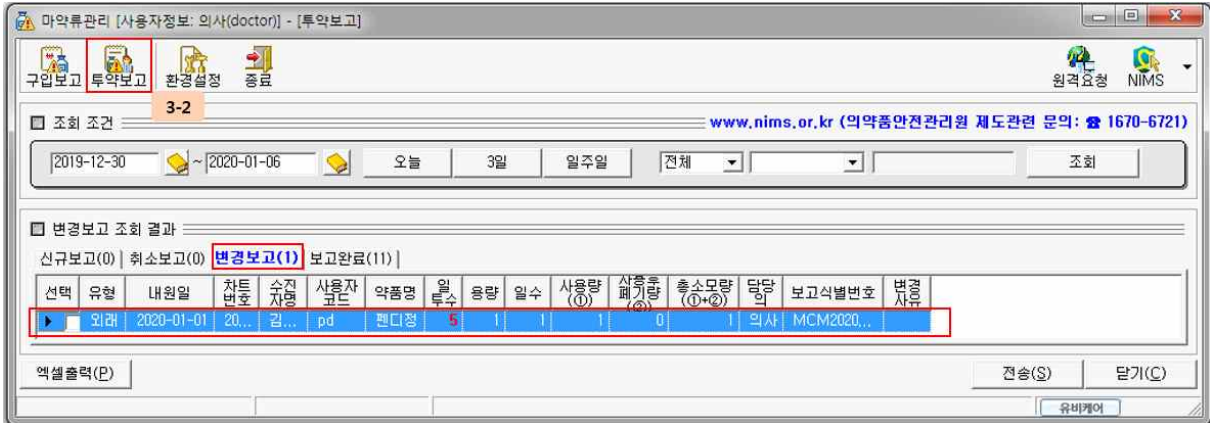
- ① 내원일을 선택합니다.
- ② 등록된 내역에서 해당하는 내역을 변경하고 [저장]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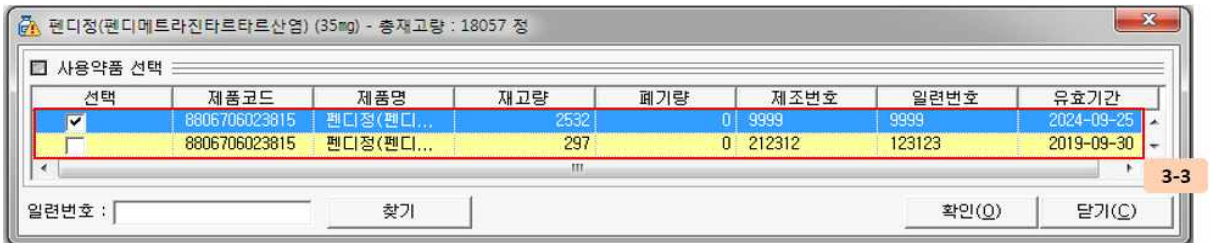


(3) 처방내역 변경보고 전송

① [도구] - [마약류시스템 투약보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② [투약보고] - [변경보고]를 선택합니다.



③ 해당 보고를 더블선택한 후 해당 약품을 [선택] - [확인]을 선택합니다.

\* 처방에서 변경된 내역은 붉은 글씨로 표시가 됩니다.

\*\* 이전에 보고된 해당 약품은 노란색 음영으로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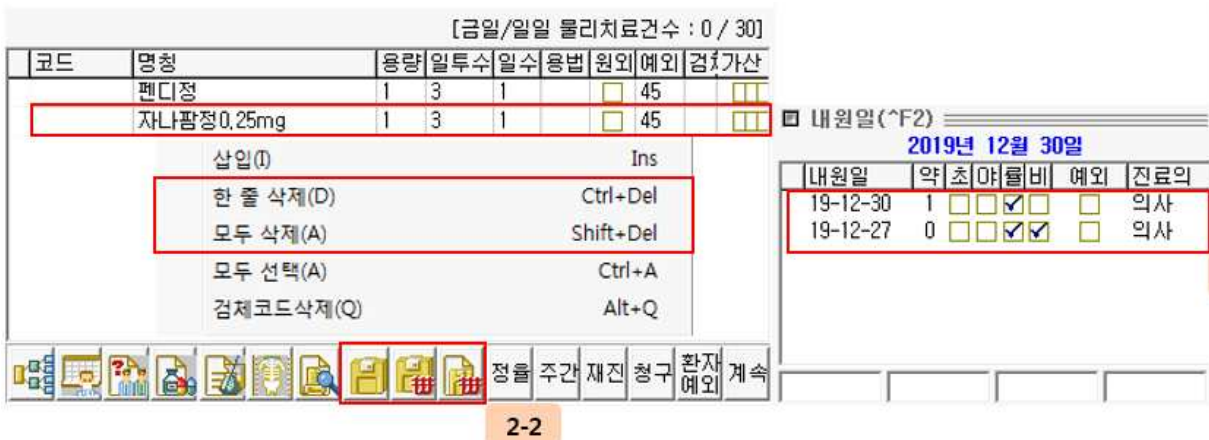
④ 변경사유를 입력하고 [전송]을 선택하여 투약보고 변경보고를 확인합니다.

4-4 연계소프트웨어(의사랑) 투약 취소보고 따라하기



(1) 진료실에서 환자 선택

- ① [전체환자]를 선택하여 투약보고 변경할 환자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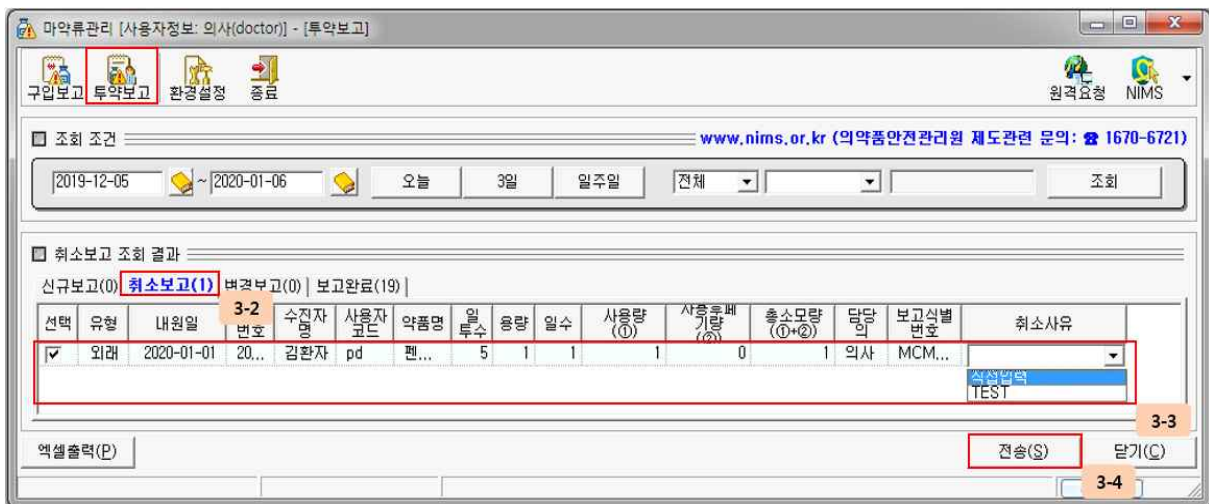
(2) 조제/투약 약품정보 취소

- ① 내원일을 선택합니다.
- ② 등록된 내역에서 해당하는 내역을 삭제하고 [저장]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3) 처방내역 취소보고 전송

① [도구] - [마약류시스템 투약보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② [투약보고] - [취소보고]를 선택합니다.

③ 해당 보고를 선택하여 취소사유를 입력합니다.

④ [전송]을 선택하고 투약보고 취소보고를 확인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

---

발 행 일 2020년 1월

발 행 인 이의경

편 집 위 원 장 김상봉

편 집 위 원 <마약관리과>

최승진, 권대근, 김익상, 주민진, 김지원, 홍수현, 오승민

발 행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 2819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01호

TEL : 043-719-2891~2899 FAX : 043-719-2890

<<http://www.mfds.go.kr>>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의료 기관용



###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

**부조리 신고**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국민신문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공익 신고**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부패 · 공익신고 상담" 코너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